

충청남도 간행물등록번호

6440878-2021-009

2021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발간사

코로나 시기 장애인, 이주민, 아동, 청소년 등 인권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지자체는 인권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민의 삶을 둘러보고 시의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인권영향평가는 도민의 삶과 밀접한 지자체 행정이 도민의 삶에 인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하는 역할을 하여 도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2019년부터 조례, 규칙을 제·개정할 때 반드시 인권영향평가를 거치도록 하여 2021년까지 250개의 자치법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해마다 3개의 시책을 선정해 인권위원회와 인권지킴이단, 당사자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권영향평가단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시책의 인권 책무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인권영향평가는 평가의 대상인 자치법규와 시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인권영향평가 과정에 참여한 평가단과 인권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인권보호관 모두의 인권의식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어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올해 시책 인권영향평가단으로 활동해주신 인권위원님들과 인권지킴이단, 당사자, 전문가들께 감사드리며 시책 인권영향평가의 처음부터 끝까지 애써주신 인권보호관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책 담당 부서 공무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관련 자료 제출부터 간담회 참석 등 인권영향평가 기간 동안 협조를 잘해주셔서 올해도 인권영향평가가 원만히 끝났습니다.

앞으로 자치법규 및 시책 인권영향평가가 이주민과 장애인, 노동자, 농민 등 다양한 사람이 더불어 잘 사는 인권 충남의 마중물이 되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인권센터

● 목차

● 발간사	3
-------------	---

제1장 2021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추진개요

1. 인권의 정의	9
2. 인권영향평가의 이해	9
3. 인권영향평가 배경 및 필요성	10
4. 인권영향평가 추진근거	10
5. 인권영향평가 추진방법	11
가.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11
나. 시책 인권영향평가	12

제2장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평가자료 작성 요령

1. 담당 부서 자체점검표	17
2.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20
3.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부서 의견서	22

제3장 2021 충청남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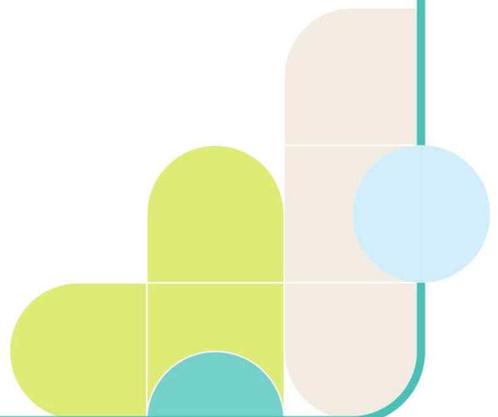
1. 평가개요	27
2. 평가기준	27
3. 추진현황	28
4.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개선권고 주요 내용	34
5.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추진실적	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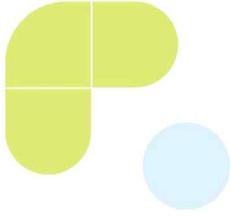
제4장 2021 충청남도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

- 1. 평가개요 61
- 2. 추진경과 61
- 3.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수어통역) 62
- 4.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북한이탈) 68
- 5.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노인맞춤) 74

(부록)

- 1. 2020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추진내역 83
 - 1-1. 2020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개선권고 결과 87
- 2. 2020년 시책 인권영향평가 추진내역 89
 - 2-1. 2020년 시책 인권영향평가 개선권고 결과 90
- 3.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95
- 4. 충남 도민 인권선언문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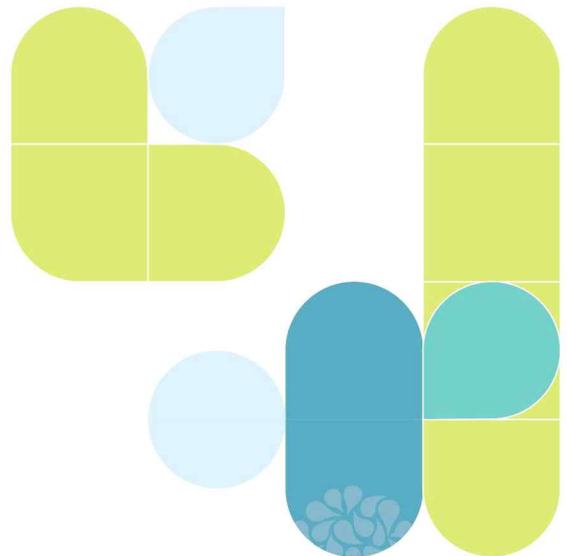




제 1 장

2021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추진개요

1. 인권의 정의
2. 인권영향평가의 이해
3. 인권영향평가 배경 및 필요성
4. 인권영향평가 추진근거
5. 인권영향평가 추진방법
 - 가.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 나. 시책 인권영향평가



1

2021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추진개요

1 인권의 정의

- 인권 :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 세계인권선언 : 모든 인간은 태어날때부터 존엄성과 권리에 동등하고, 선택된 사람의 특권이 아니며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 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2 인권영향평가의 이해

가.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는 자치법규를 시행함에 있어서 도민에게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기본권과 인권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며, 입안 담당자의 인권 감수성과 관심도를 높이는 데에도 목적이 있다.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함으로써 법규(조례, 규칙 등)를 인권적으로 제도화하여 인권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하는 제도이다.

나. 시책 인권영향평가

시책 인권영향평가는 시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이나 현안 사안으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 개별 특성에 맞는 평가표를 만들어 해당 분야의 인권이 어떻게 보호되고 실현되는지 점검하여 환경을 인권 친화적으로 변화시키는 제도이다.

3 인권영향평가 배경 및 필요성

충청남도의회는 2018년 5월에 인권 관련 조례를 폐지하였다가 2018년 10월에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를 다시 제정하였다. 충청남도는 2019년부터 조례에 포함된 인권영향평가 추진근거를 토대로 충청남도가 시행하고 있는 조례 및 시행규칙과 시책을 점검하여 인권의 가치를 높이고 제도의 변화를 위해 자치법규 및 시책 인권영향평가를 도입하여 추진하였다.

가.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자치법규는 각 지자체 상황에 맞는 절차와 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고 비슷하지만 다른 방향성을 가진 경우도 있다. 이는 도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권적 검토를 통해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인권 행정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나. 시책 인권영향평가

시책은 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에서 인권적인 구성, 운영이 되고 있는지 혹은 도민이 인권침해를 받을 가능성 등을 세부적인 내용까지 점검할 수 있도록 분야별 평가표를 만들고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여 직접적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4 인권영향평가 추진근거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와 「충청남도 법제사무처리규정」에서는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에서 시책 선정, 충청남도 인권센터에서 인권영향평가를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조례 및 규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부서에서는 인권센터에 인권영향평가를 의뢰하도록 하고 있다.

-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9조, 제14조, 제19조
 - 제2장 보호 및 증진사업
 - 제9조(인권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인권영향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규칙
 2. 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시책 등
 - 제3장 인권위원회
 - 제14조(설치 등)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4.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제4장 인권센터
 - 제19조(설치·운영)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충청남도 법제사무처리규정」
 - 제2장 입법계획 수립 및 입법의견 수립
 - 제5조(입법안 협의 등) ③ 주관과장은 조례·규칙 입법안을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담당하는 관계 부서의 장에게 보내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성별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부패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인권영향평가 담당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그 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 제3장 입법안 심사 등
 - 제8조(제2차 법제심사) ① 주관과장은 제5조 및 제6조의 결과를 반영한 입법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법무담당관의 심사(제2차 법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7. 인권영향평가 결과통보서

5 인권영향평가 추진방법

가.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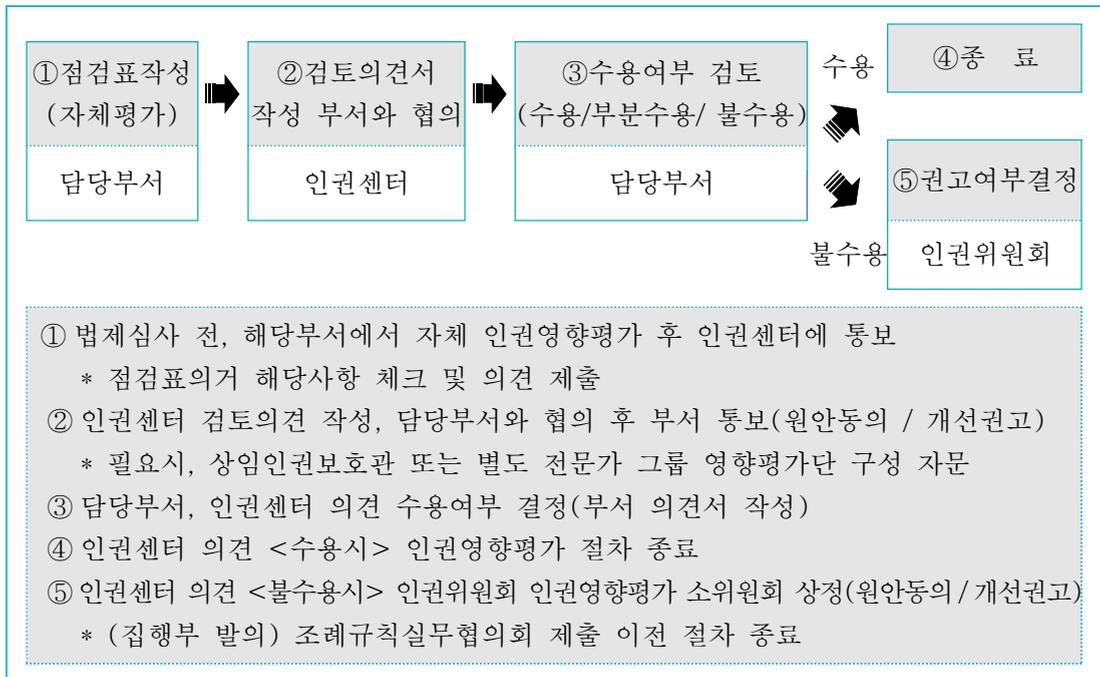
충청남도에서 제·개정을 추진하는 모든 조례와 규칙은 법제심사 전 인권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조례·규칙을 제·개정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자치법규에 대해 자체 점검표를 작성하여 인권센터에 인권영향평가를 의뢰한다. 인권센터는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타 지자체

조례와 비교검토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통지한다. 이때 원안동의라면 절차는 종료되고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개선권고를 통지하게 된다. 개선권고를 받은 담당 부서는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수용 여부(수용, 부분수용, 불수용) 의견을 인권센터에 회신하는데 불수용 시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권고 여부를 재결정한다.

● **평가대상 및 시기**

- 평가대상 : 제·개정 추진하는 모든 조례·규칙(의원발의 제외)
- 평가시기 : 법제심사 전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평가 흐름**



나. 시책 인권영향평가

충청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사업) 중 도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회적 약자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책 가운데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선정된 시책을 인권영향평가의 대상으로 한다.

평가대상 선정 후 담당 부서와 시책 인권영향평가의 목적과 방향에 대해 논의를 하며,

상호 협조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한다. 이렇게 시책이 선정되면 인권센터에서는 각 평가 대상별 시책 인권영향평가단을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시책 인권영향평가단은 인권위원, 도민인권지킴이단, 당사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평가단은 해당 시책에 대해 인권적 측면을 고려한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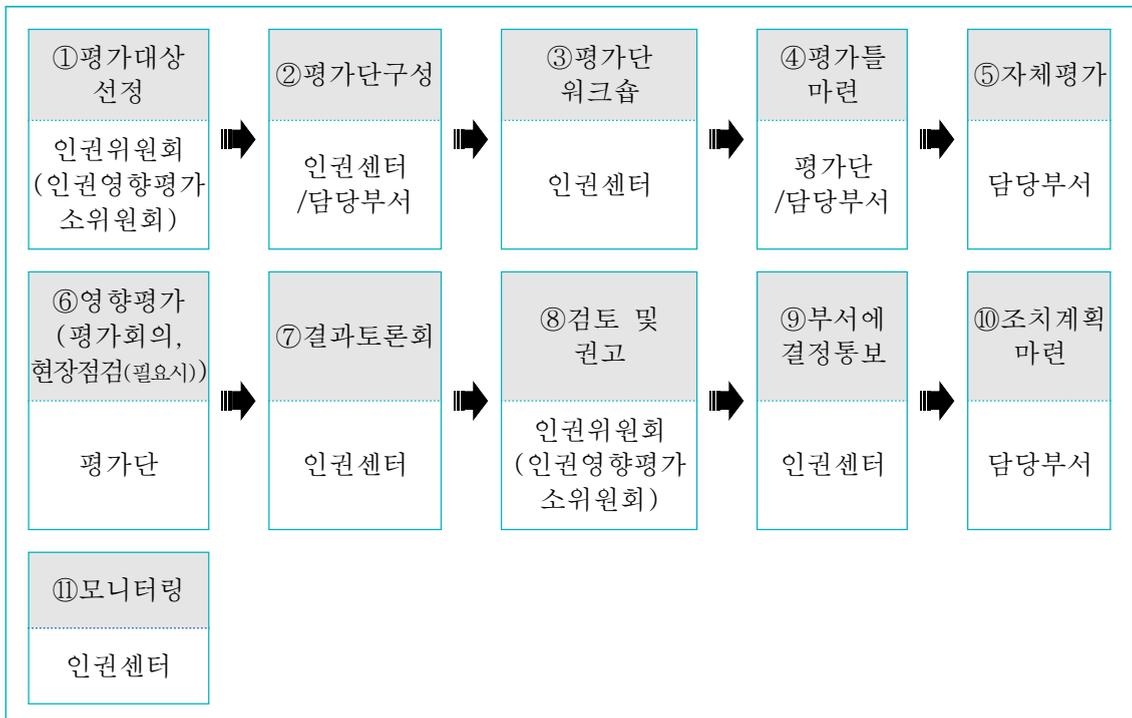
평가 기준을 토대로 인권영향평가단 회의를 4~5회 진행하고 평가의견서를 작성하여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에 상정한다.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에서는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따라 권고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인권센터에서는 인권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담당 부서로 통보하고 담당부서에서는 검토 의견에 따른 조치 계획을 마련하여 이행해야 하며 인권센터에서는 이행 관련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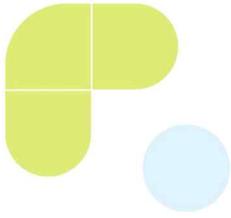
● 평가대상

- 평가대상 : 인권위원회에서 선정한 도민 인권 증진시책 등

● 시책 인권영향평가 평가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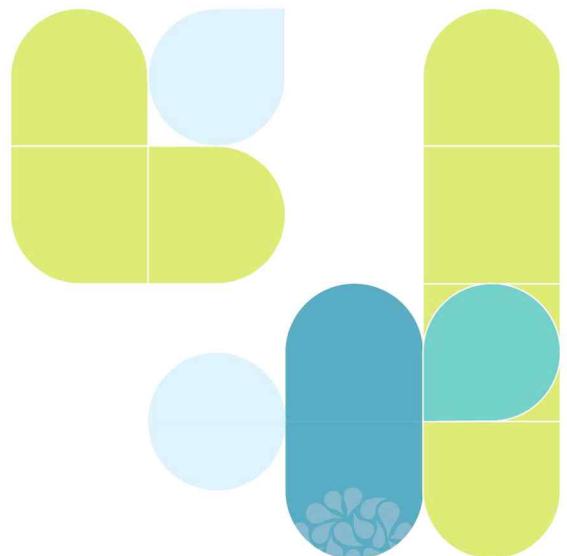
- ① 도민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존 사업 또는 주요 신규사업 선정
 - * 인권위원회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과 논의 과정을 통해 선정
- ② 인권영향평가단 구성 : 10명 이내(인권위원, 인권지킴이단, 관련 전문가 등)
- ③ 인권영향평가단 사전 교육
- ④ 시책별 평가기준(점검표) 마련
- ⑤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평가 실시
- ⑥ 평가단 논의 및 의견서 작성 (전문가 검토의견 및 컨설팅 첨부)
 - * 초안 작성(인권센터) → 평가단 논의·의견서 작성을 위한 회의 개최(2~3회)
 - ★ 필요시, 인권영향평가단 - 현장점검, 이해관계자 및 당사자 인터뷰 실시
- ⑦ 결과발표 및 토론, 부서이견 수렴
- ⑧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최종 검토(권고여부 등 판단)
- ⑨ 검토의견에 따른 담당부서 조치계획 등 전달
- ⑩ 담당부서 조치계획 수립
- ⑪ 인권위원회 권고사항 등 이행관련 모니터링



제 2 장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평가자료 작성 요령

1. 담당 부서 자체점검표
2.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3.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부서 의견서



2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평가자료 작성 요령

1 담당 부서 자체점검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는 충청남도에서 제·개정되는 자치법규를 시행하기 전에 도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활동이다.

자체 점검표 작성을 통해 담당 부서에서는 인권적 관점으로 1차 점검을 하고, 이에 따라 자치법규가 도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할 수 있도록 하여 인권 행정을 끌어 내기 위함이 목적이다.

담당 부서에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의뢰하기에 앞서 인권 규범 및 인권 기본원칙과 충돌하는지 여부를 참고하여 해당 자치법규에 대한 자체 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인권영향평가 자체 점검표는 5개 항목, 12개 질문으로 자치법규 내용에서 기본권 제약과 인권침해 등을 점검하는데, 법제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인권적 가치 측면에서 도민이 인권침해를 받지 않는지와 같은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

자체 점검표를 통해 개선할 내용을 포함하여 인권센터로 제출하면 되고, 제·개정 시 인권센터 의견과 함께 반영하면 된다.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담당 부서 자체점검표

조례·규칙명	충청남도 00000000 조례(규칙)		
구 분	<input type="checkbox"/> 제정	<input type="checkbox"/> 개정	
관 련 법 령	00법률 제00조,		
입 법 일 정 (예 정)	입법예고	20 - - ~	20 - - (일간)
	법제심사	20 - - ~	20 - - (기간중 예정)
붙 임 자 료	필수자료	조례·규칙안 및 방침자료, 점검표, 관련규정(고시, 훈령, 지침 등)	
	기타자료		

※ 해당사항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질 문	응 답	자체개선 (예로 체크한 경우)
기본권 제약	관련조항이 국내의 인권규범 및 인권기본원칙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제개정안: *수정안:
	도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제개정안: *수정안: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상위법 등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제개정안: *수정안:
	관련조항의 표현과 내용이 전반적으로 일반 시민의 수준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되고 알 수 있는 문구인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제개정안: *수정안:
인권 침해	관련조항으로 사회적 소수자/약자에게 어떤 침해(사실상의 침해를 포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제개정안: *수정안:
	관련조항에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규정이 포함되어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제개정안: *수정안:
	관련조항에서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표현이나 내용이 사용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모르겠음	*제개정안: *수정안:
구제 수단	관련조항에 사회적 약자의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하고 이를 반영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제개정안: *수정안:
	관련조항으로 침해를 받을 경우 이와 관련한 개인이나 집단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제개정안: *수정안:
공개	제개정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도민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공개 및 제공되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제개정안: *수정안:
참여	제개정 과정에서 도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보장되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제개정안: *수정안:
	위원회 등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 등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가?	① 예 ② 아니오 ③ 해당없음	*제개정안: *수정안:

작성자	부서명	직위(급)	성 명	전화번호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자체점검표 작성 참조사항

구 분	검 토 내 용																						
기본권 제약	인권규범 및 인권기본원칙과 충돌하는지 여부 검토 - 세계인권 선언 등 고려(http://edu.humanrights.go.kr/academy/eduinfo/worldHnrtList.do)																						
	기본적 인권의 제한 또는 침해 요소가 있는지 여부 검토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298 552 431 596">인권 분야</th> <th data-bbox="431 552 1283 596">세 부 내 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98 596 431 677">민주적 참여권</td> <td data-bbox="431 596 1283 677">행정정보에 대해 알 권리 도에 설명을 요구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td> </tr> <tr> <td data-bbox="298 677 431 758">주거권</td> <td data-bbox="431 677 1283 758">건강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 적절한 대책없는 강제퇴거 금지</td> </tr> <tr> <td data-bbox="298 758 431 838">교육권</td> <td data-bbox="431 758 1283 838">교육에 적합한 시설과 환경에서 생애주기별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td> </tr> <tr> <td data-bbox="298 838 431 979">건강권</td> <td data-bbox="431 838 1283 979">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 질병이나 병력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안전하게 먹을 권리 감염병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td> </tr> <tr> <td data-bbox="298 979 431 1060">문화권</td> <td data-bbox="431 979 1283 1060">공공시설에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하여 표현, 창작할 권리</td> </tr> <tr> <td data-bbox="298 1060 431 1201">안전권</td> <td data-bbox="431 1060 1283 1201">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보행 및 교통에서 안전할 권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폭력에서 보호받을 권리</td> </tr> <tr> <td data-bbox="298 1201 431 1282">환경권</td> <td data-bbox="431 1201 1283 1282">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공해, 소음 등에서 보호받을 권리</td> </tr> <tr> <td data-bbox="298 1282 431 1362">이동권 접근권</td> <td data-bbox="431 1282 1283 1362">자기 의사에 따라 이동할 권리 공공 시설이나 행사에서 장애나 신체의 불편 여부와 관계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권리</td> </tr> <tr> <td data-bbox="298 1362 431 1443">노동권</td> <td data-bbox="431 1362 1283 1443">차별없이 공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노동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td> </tr> <tr> <td data-bbox="298 1443 431 1503">개인 정보 보호권</td> <td data-bbox="431 1443 1283 1503">개인정보의 보호(사적정보 처리의 자기결정권) 사생활이 보호받을 권리</td> </tr> </tbody> </table>	인권 분야	세 부 내 용	민주적 참여권	행정정보에 대해 알 권리 도에 설명을 요구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주거권	건강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 적절한 대책없는 강제퇴거 금지	교육권	교육에 적합한 시설과 환경에서 생애주기별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	건강권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 질병이나 병력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안전하게 먹을 권리 감염병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	문화권	공공시설에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하여 표현, 창작할 권리	안전권	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보행 및 교통에서 안전할 권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폭력에서 보호받을 권리	환경권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공해, 소음 등에서 보호받을 권리	이동권 접근권	자기 의사에 따라 이동할 권리 공공 시설이나 행사에서 장애나 신체의 불편 여부와 관계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권리	노동권	차별없이 공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노동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개인 정보 보호권	개인정보의 보호(사적정보 처리의 자기결정권) 사생활이 보호받을 권리
	인권 분야	세 부 내 용																					
	민주적 참여권	행정정보에 대해 알 권리 도에 설명을 요구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																					
	주거권	건강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 적절한 대책없는 강제퇴거 금지																					
	교육권	교육에 적합한 시설과 환경에서 생애주기별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																					
	건강권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 질병이나 병력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안전하게 먹을 권리 감염병 환자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건의료 제공																					
	문화권	공공시설에 쉽게 접근하여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 다양한 문화활동에 참여하여 표현, 창작할 권리																					
	안전권	재난 및 사고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안전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보행 및 교통에서 안전할 권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폭력에서 보호받을 권리																					
	환경권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공해, 소음 등에서 보호받을 권리																					
이동권 접근권	자기 의사에 따라 이동할 권리 공공 시설이나 행사에서 장애나 신체의 불편 여부와 관계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권리																						
노동권	차별없이 공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노동할 권리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개인 정보 보호권	개인정보의 보호(사적정보 처리의 자기결정권) 사생활이 보호받을 권리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나 난해한 표현을 사용하여 일반도민의 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렵게 하거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추상적인 내용이 포함되어있는지를 확인 - 불허가 기준으로 '공익', 제한요건으로 '공공의 안전' 등																							
인권 침해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요소가 있는지 검토 - 어린이, 청소년, 여성, 비혼모, 장애인, 노인,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병력이 있는 사람, 비정규노동자, 생활보호대상자, 전과자 등																						
	'정상인, 정신병자 등'인권침해적 용어나, 특정집단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반영된 내용이 있는지 검토																						

2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는 담당 부서의 자체평가표를 검토하고, 인권의 제한 또는 침해 요소가 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한 후 타 지자체 조례와의 교차 검토 등의 절차를 진행한 후 작성된다.

인권센터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개선권고 결과 통보서를 작성하고, 담당 부서와 관련 내용에 대해 협의하여 평가를 진행한다.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권고는 ‘조문 내용수정’, ‘용어 수정’, ‘조항 수정’, ‘부적절한 표현 삭제’ 등을 개선 권고 사유와 함께 통보하게 된다.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 조례(규칙) 제(개)정안		
입안주무부서	○○○○과	결과 통보일	202○. . .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p>제○조(자원순환 성과관리) 도지사는 법 제○조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인 최종 처분율</p> <p>2.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순환이용량의 비율인 순환이용률 (예시)</p>	<p>[권고내용] 조항추가 권고</p> <p>제○조(자원순환 성과관리)에 명시된 각호의 ‘폐기물에 관한 적용대상’ 조항추가 (예시)</p> <hr/> <p>[개선권고 사유]</p> <p>- 환경부 지침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적용대상 폐기물)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폐기물을 1천 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명시하고 있음</p> <p>- 타 광역지자체(○○○도, ○○○도, ○○도) 자원순환 기본조례에서도 환경부 지침에 따라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조문이 추가되어 있음</p> <p>- 따라서 제○조(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항에 대한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헌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폐기물에 관한 적용대상 조항’을 추가할 것을 권고함 (예시)</p>		

작성자	부서명	직위	성명	전화번호
	충청남도 인권센터			

3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부서 의견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서는 인권영향평가의 개념 등을 통해 점검하고 사전 협의를 하여 통지하기 때문에 인권센터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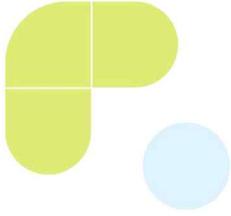
이에 따라 담당 부서에서는 수용, 부분수용, 불수용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고 부분수용, 불수용 시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여 인권센터로 제출하여야 한다.

불수용 시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에 상정하여 권고여부를 재결정하며, 원안 동의 혹은 재(再) 개선권고를 하게 된다.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부서의견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통보에 대한 부서의견서			
자치법규명	충청남도 ○○○○○○○○ 조례(규칙) 제(개)정안		
해당조항	인권영향평가 결과	수용 여부	부분수용 및 불수용 시 부서의견
<p>제○조(자원순환 성과관리) 도지사는 법 제○조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1.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인 최종처분율</p> <p>2.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순환이용량의 비율인 순환이용률 (예시)</p>	<p>[권고내용] 조항추가 권고 제○조(자원순환 성과관리)에 명시된 각호의 ‘폐기물에 관한 적용대상’ 조항추가 (예시)</p> <p>[개선권고 사유]</p> <p>- 환경부 지침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적용대상 폐기물)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폐기물을 1천 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명시하고 있음</p> <p>- 타 광역지자체(○○○도, ○○○도, ○○도) 자원순환 기본조례에서도 환경부 지침에 따라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조문이 추가되어 있음</p> <p>- 따라서 제○조(자원순환 성과관리) 제○항에 대한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헌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폐기물에 관한 적용대상 조항’을 추가할 것을 권고함(예시)</p>	<p>■ 수용 □ 부분수용 □ 불수용</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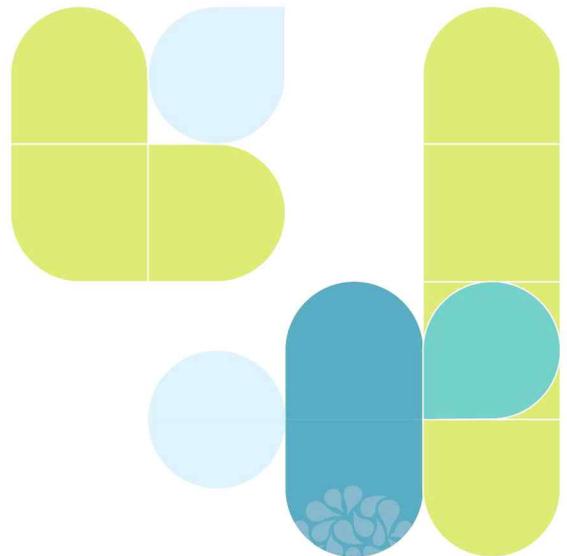
작성 자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전화번호



제 3 장

2021 충청남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1. 평가개요
2. 평가기준
3. 추진현황
4.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개선권고 주요 내용
5.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추진실적



3 2021 충청남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결과

1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제·개정 추진하는 모든 조례·규칙(의원 발의 제외)
- 평가시기 : 법제심사 전
- 평가내용 : 자치법규 제·개정 시 도민에게 미칠 인권침해와 차별가능성 등 분석 평가

2 평가기준

평가분야	평가항목
기본권 제한	관련조항이 국내외 인권규범 및 인권기본원칙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가?
	도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가?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 상위법 등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관련조항의 표현과 내용이 전반적으로 일반 시민의 수준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되고 알 수 있는 문구인가?
인권 침해	관련조항으로 사회적 소수자/약자에게 어떤 침해(사실상의 침해를 포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가?
	관련조항에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규정이 포함되어 있는가?
	관련조항에서 특정인이나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표현이나 내용이 사용되고 있는가?
구제 수단	관련조항에 사회적 약자의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하고 이를 반영하고 있는가?
	관련조항으로 침해를 받을 경우 이와 관련한 개인이나 집단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가?
공개	제·개정 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도민들과 이해관계자들에게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공개 및 제공되었는가?
참여	제·개정 과정에서 도민들과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적법하고 절차에 맞게 보장되었는가?
	위원회 등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 등 다양성과 차이를 고려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가?

3 추진현황

가. 인권영향평가 실시 현황

충청남도 인권센터는 자치법규 제·개정을 추진하는 부서에서 의뢰한 100개의 조례나 규칙 등에 대해서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이 중 조례 61개, 규칙 35개, 규정 4개였으며 제정 17개, 개정 78개, 폐지 5개였다.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의뢰 현황

	계	제 정	개 정	폐 지
조례	61	7	53	1
규칙	35	6	25	4
규정	4	4		
계	100	17	78	5

나. 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및 개선권고 현황

충청남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점검표는 기본권 제약, 인권침해, 구제 수단, 공개, 참여 등 5개 분야로 되어 있으며, 각 분야의 구체적인 평가항목은 12개의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3-1)

평가를 진행한 100개 중 79개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21개 자치법규(제정 조례 5개, 개정 조례 7개, 제정 규칙 2개, 개정 규칙 5개, 규정 2개)에 대해 개선 권고하였다.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개선권고 현황

	계	제 정	개 정	폐 지
조례	12	5	7	
규칙	7	2	5	
규정	2	2		
계	21	9	12	0

다. 개선권고에 대한 수용 여부

평가 결과 개선 권고된 21개에 대해 담당 부서 결과 통보 후 부서 의견을 회신한 결과 ‘충청남도 재난관리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안’은 권고했던 표현 중 애매한 표현에 대해서만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머지는 모두 수용하여 부분수용이 되었다. 또한, 나머지 20개 권고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하였다.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개선권고 수용 여부

심의건수	원안동의	개 선 권 고					
		소계	수용	부분수용	불수용	진행중	기타
100	79	21	20	1	-	-	-

● 조례별 개선권고 수용여부

연번	조 례 명	권 고 사 안	조치 결과
1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 포함 권고 ▶ ‘보좌’는 ‘상관을 도와 일을 처리함’이라는 뜻.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서로 협력해야 하는 평등한 관계임으로 상하관계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 삭제 권고 ▶ 한자로 되어있는 법령을 한글화하여 쉬운 우리말로 변경, ‘자’를 ‘사람’으로 수정 권고 	수용
2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 포함 권고 ▶ ‘활용’은 ‘충분히 잘 이용함’이라는 뜻으로 일상생활에서는 물건 등 사물에 사용. 인간은 그 존재만으로도 존엄하므로 사물에 빗대어 낮춰 불러서는 안 됨. ‘활용’을 ‘자문’으로 수정 권고 	수용
3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 포함 권고 	수용
4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者)”는 일본식 한자어로 ‘자가’ ‘사람’만을 의미할 때는 ‘사람’으로 고쳐 사용, ‘자’를 ‘사람’으로 수정 권고 	수용

연번	조 례 명	권 고 사 안	조치 결과
5	충청남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는 용어가 여러 번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의가 없어 관련 조항을 이해하기 어려움. 따라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정의를 추가하여 도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 권고 ▶ ‘실지’는 도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므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순화해야 함 ▶ 일본어 투 표현인 “자”를 “사람”으로 수정하여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바꿀 것을 권고 	수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 감찰을 받는 사람은 안전 감찰로 인해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함, ‘---안전 감찰을 받는 자에게 충분한 검토 시간을 주어야 하고, ---’로 수정 권고 	부분 수용
6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센티브관광’을 ‘포상관광’으로 용어 수정 권고 ▶ 이사는 위촉직이며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이므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이사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할 것을 권고 	수용
7	충청남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정 권고 	수용
8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방력”을 “소방력(소방인력 및 장비)”로 “소방응원”을 “소방업무의 응원”으로 수정 	수용
9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서로 협력해야 하는 평등한 관계임에도 ‘보좌’는 상하관계를 내포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 취지나 인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을 보좌하며’ 문구를 삭제 권고함 	수용
10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인 도민의 환경권 보장과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제6조(계획 수립 및 시행)에 종합적·체계적 시행계획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 ▶ 환경부 지침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적용대상 폐기물)에 따르면, 최근 	수용

연번	조 례 명	권 고 사 안	조치 결과
		<p>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폐기물을 1천 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명시하고 있고, 적용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폐기물에 관한 적용대상 조항’을 추가할 것을 권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조례는 지방공사와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내용만을 포함하였고, 별도의 법률에 근거한 기관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우선구매 대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 ▶ 자치법규는 일반 도민의 수준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지켜야 하기에, 외국어인 “인센티브”보다 쉬운 우리말인 “포상”으로 고쳐 도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 	
11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민의 정보접근권 및 알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제2조(정의)에 “금융기관” 조항을 추가할 것을 권고 	수용
12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조항 추가 권고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서로 협력해야 하는 평등한 관계임에도 ‘보좌’는 상하관계를 내포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 취지나 인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을 보좌하며’ 문구를 삭제 권고함 	수용
13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 추가 ▶ 제10조(기금의 관리) 해당 조항은 ‘관하여’ 문구가 포함되지 않아도 문장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를 권고 	수용

연번	조 례 명	권 고 사 안	조치 결과
14	도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기본법」 제7조 제4호에 따르면 차별 없는 문화 복지가 증진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적이 다르더라도 문화 향유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함 따라서, 제3조(정의)에 “도민문화권” 정의 내용에 ‘장애’와 ‘국적’을 포함할 것을 권고 ▶ ‘사회적 확산’이라는 표현은 ‘으로’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된다. 생략된 조사인‘으로’를 적어 줌으로써 그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 것임. - 따라서, 제3조(정의) 내용 중‘사회적’ → ‘사회적으로’로 수정할 것을 권고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문화·예술 활동의 차별금지)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되어있음. 따라서 제7조(도민문화권 보장 및 증진)에 ‘장애’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 	수용
15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 추가 권고 	수용
16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센티브”는 ‘어떤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장려(우대)책’을 의미하고 - 관람객 유치를 위한 장려책으로 사용한 제6조(관람객 유치)에 외국어 “인센티브”를 보다 쉬운 우리말인 “혜택”으로 고쳐 도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 	수용
17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 추가 ▶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고가 있을 때에는’은 사고가 난 특정 상황에서만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용어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으로 순화할 것을 권고 	수용

연번	조 례 명	권 고 사 안	조치 결과
18	충청남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처리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지침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혹은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 ▶ 일본어 투 표현인 ‘행위자에 대하여’→‘행위자에게는’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 	수용
19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者)”는 일본식 한자어이며 ‘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 따라서 ‘신청자’를 ‘신청인’으로 수정 ▶ 이의신청인이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으로 수정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의신청기간 수정 7일 → 60일 	수용
20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者)”는 일본식 한자어이며 ‘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6조(공동상표 사용권의 신청)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을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으로 수정 - 제7조(공동상표 사용권의 부여) 부적합 통지를 받은 ‘자’를 부적합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 수정 - 제9조(공동상표의 사용 범위)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를 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수정 권고 	수용
21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일본식 투 표현을 답습한 제8조(지역개발채권의 사고 신고)의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수정 권고	수용

4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개선권고 주요 내용

평가 결과 개선 권고된 26개 조항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권 제약 분야에는 자의적 해석으로 권한이 남용될 소지가 있는 등 도민의 알권리를 제약한 조항 4개, 지나치게 어려운 용어나 능동적 용어로 수정 등 용어 정비를 권고한 조항 6개였으며, 인권침해 분야에는 특정 성별 편중 방지를 위해 권고한 조항 10개,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권고한 조항 5개, 특정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을 수정 권고한 조항 1개였다.

●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개선권고 내용

분 야		내 용	비 고
기본권 제약	가. 도민의 알권리 보장	1. “재난관리책임기관” 용어 정의 추가	
		2. “실지”를 “실제”로 용어 수정	
		3. 참조 조항 수정 권고	3건
		4. 안전감찰통지서 근거 수정 권고	
		5. “인센티브”를 “포상”, “혜택”으로 용어 수정	3건
		6. “소방력”을 “소방력(소방인력 및 장비)”로 “소방응원”을 “소방업무의 응원”으로 수정	
		7. 일본어 투 표현 삭제 및 수정 권고	7건
		8. ‘사회적’을 ‘사회적으로’로 내용 추가	
		9. “금융기관”의 정의 추가 권고	
		10. 용어 순화 권고	
		11. ‘시행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내용수정 권고	
		12. 시행계획 수립 사항 구체적으로 추가	
		13. “폐기물에 관한 적용대상” 조항 추가	
		14. 품질표지 인증 우선구매 기관 추가	
나. 도민의 권리 제한	1. 도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내용수정		
	2. 이의신청기간 수정		
인권 침해	다. 특정 성별 편중 방지	성비 균형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9건
	라. 차별적 용어 사용	1. ‘보좌’ 용어 삭제	
		2. ‘자’를 ‘사람’으로 용어 수정	6건
	마. 특정집단 배제	1. ‘장애’, ‘국적’ 내용 추가	2건
		2. 외부위원 참여 및 수당지급 관련 수정	

가. 기본권 제약-도민의 알권리 보장

도민의 알권리 보장과 자의적 해석 방지를 위해 용어 정의 추가, 조문 내용 및 용어 수정, 조항 근거 수정, 일본어 투 표현 등을 수정하라고 권고했다.

1) “재난관리책임기관” 용어 정의 추가

해 당 조 항	권 고 내 용
<충청남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안>	
제3조(정의) 1. “안전감찰”----- 2. “안전감찰관”----- 3. “안전감찰대상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용어 정의 필요

- ◆ 자치법규는 도민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지켜야 함
- ◆ 「충청남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살펴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는 용어가 여러 번 사용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의가 없어 관련 조항을 이해하기 어려움
- ◆ 따라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정의를 추가하여 도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

2) “실지”를 “실제”로 용어 수정

해 당 조 항	권 고 내 용
<충청남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안>	
제3조(정의) 3. “안전감찰대상기관”이란 재난관리 책임기관 중 안전감찰관이 안전감찰을 위해 예비실지 등의 형태로 조사·평가하고자 하는 기관을 말한다.	‘실지’를 ‘실제’ 등으로 수정 ※ ‘실제’로 바꾸는 적이 적절하지 않으면 새로운 다른 순화 용어를 찾아서 바꾸거나 현행 그대로 쓸 수 있음
제5조(안전감찰의 방법) ① 안전감찰은 실지감찰이나 서면감찰의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지감찰은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찰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해 당 조 항	권 고 내 용
<p>제10조(안전감찰 실시절차) ① 안전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안전감찰 실시절차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p> <p>1. 안전감찰관은 실지 안전감찰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안전감찰의 주요 내용과 별지 제 1호서식 안전감찰 통지서를 작성하여 감찰 예정일 7일전까지 안전감찰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안전감찰을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안전감찰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p> <p>제11조(보고사항) ① 안전감찰관은 실지 안전감찰 활동이 끝난 뒤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p>	

-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제9판)」에 따르면 정비 대상 용어를 순화 용어로 바꿀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제시한 순화 용어를 해당 규정에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면 새로운 다른 순화 용어를 찾아서 바꾸거나 현행 그대로 쓸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음
- ◆ ‘실지’는 도민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므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순화해야 함

3) 참조 조항 수정 권고

해 당 조 항	권 고 내 용
<충청남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안>	
<p>제18조(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 ③ 안전감찰대상기관의 장 또는 안전감찰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보 이전에 도지사에게 신청한다.</p> <p>⑧ 제14조제1항에 따른 통보 시 제7항에 따른 판단을 처분요구에 반영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보하여야 한다.</p>	<p>“제14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으로 수정</p>

- ◆ 안전감찰 결과의 통보 규정하는 조항은 제15조제1항임.
- ◆ 도민의 정확한 알권리를 위해 참조 조항 번호를 수정할 것을 권고함

해 당 조 항	권 고 내 용
<충청남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안>	
제18조(적극행정 면책의 운영절차) ⑥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른 면책 신청을 처리하기 위하여 면책 심의를 거쳐야 하되, 면책심의회와 관련하여서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수정

- ◆ 제18조 제6항은 면책 신청 처리를 위해 면책심의회를 거쳐야 하고, 면책심의회는 처분심의회를 준용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 ◆ 처분심의회는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도민의 정확한 알권리를 위해 참조 조항 번호를 수정할 것을 권고함

4) 안전감찰통지서 근거 조항 수정 권고

해 당 조 항	권 고 내 용
<충청남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안>	
안전감찰통지서	“제30조 및 시행령 제38조제3항에”을 “제77조”로 수정

- ◆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 도민의 정확한 알권리를 위해 관련 법 조항 번호를 수정할 것을 권고함

5) “인센티브”를 “포상”, “혜택”으로 용어 수정

해 당 조 항	권 고 내 용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제4조(사업) 1호~2호 생략 3. 기업회의·인센티브관광·국제회의·전시회 등 육성 지원 4호~13호 생략	“인센티브관광”을 “포상관광”으로 용어 수정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제13조(재정지원 등) ② 도지사는 폐기물 감량 및 재사용·재활용 활 성화 등을 위해 사업자 및 도민 등에게 홍보용품,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인센티브관광”을 “포상관광”으로 용어 수정

- ◆ 자치법규는 일반 도민의 수준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도민
 의 알권리를 지켜야 함
- ◆ 법제처에서 발행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첫 번째 기본원칙인 ‘쉬운
 법령’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모든 법령문을 한글로 표기한다.
 :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 용어, 외국어 등을 ‘쉬운 우리말’
 로 정비한다.
- ◆ 국립국어원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에서는 “인센티브”를
 “성과급/유인책/보상/혜택/특전”으로 다듬어 사용하길 권장하고 있음
- ◆ “인센티브”는 ‘(어떤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장려(우대)책’을 의미함
- ◆ MICE 산업의 MICE는 회의(Meeting), 포상 또는 인센티브 관광
 (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
 임.
- ◆ 외국어인 “인센티브”보다 쉬운 우리말인 “포상”으로 고쳐 도민 누구나 이해
 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함

해 당 조 항	권 고 내 용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관람객 유치)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국내·외 여행사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인센티브를”을 “혜택을”으로 용어 수정

- ◆ 자치법규는 일반 도민의 수준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지켜야 함
 - ◆ 법제처에서 발행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첫 번째 기본원칙인 ‘쉬운 법령’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음
 - : 모든 법령문을 한글로 표기한다.
 - :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한자어, 어려운 전문 용어, 외국어 등을 ‘쉬운 우리말’로 정비한다.
 - ◆ 국립국어원 「한눈에 알아보는 공공언어 바로 쓰기」에서는 “인센티브”를 “성과급/유인책/보상/혜택/특전”으로 다듬어 사용하길 권장하고 있음
 - ◆ “인센티브”는 ‘(어떤 행동을 장려하기 위한) 장려(우대)책’을 의미하고
 - ◆ 관람객 유치를 위한 장려책으로 사용한 외국어 “인센티브”를 보다 쉬운 우리말인 “혜택”으로 고쳐 도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할 것을 권고함
- 6) “소방력”을 “소방인력 및 장비”로 “소방응원”을 “소방업무의 응원”으로 용어 수정 권고

해 당 조 항	권 고 내 용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46조 제4항 1호~3호 생략 4. 소방력 운영 및 소방응원 협정 등에 관한 사항 5호~15호 생략	“소방력”을 “소방력(소방인력 및 장비)”로 “소방응원”을 “소방업무의 응원”으로 수정

- ◆ 자치법규는 일반 도민의 수준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도민의 알권리를 존중하여야 함
- ◆ 자치법규는 도민이 자주 쓰지 않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순화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음

- ◆ 「소방기본법」 제8조 제1항, 제11조에 규정된 “소방력”, “소방응원” 용어에 대한 설명을 괄호에 추가할 것을 권고함

7) 일본어 투 표현 삭제 및 수정 권고

해 당 조 항	권 고 내 용
<충청남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안>	
제10조(기금의 관리)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부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기금의 관리) ‘관하여’ 문구 삭제

-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9판」에서 ‘~에 관하여’는 일본어 투 표현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므로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고, 문맥에 따라 ‘~에 관하여’를 생략해도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면 삭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 해당 조항은 ‘관하여’ 문구가 포함되지 않아도 문장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삭제를 권고함

해 당 조 항	권 고 내 용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관람권) ② 관람권은 당일 1회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제7조(관람권) ‘1회에 한하여’를 ‘한차례에 한정하여’로 표현 수정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제8조(지역개발채권의 사고신고) ① (생략) 다만, 행정기관의 확인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제신고서를 작성하여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한하여’ → ‘한정하여’로 수정

-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9판」 정비 권고 용어에서는 일본어 투인 ‘~한하여’를 수정하도록 하고 있고, ‘1회에 한하여’에 관해서는 ‘한 차례만’, ‘한 번만’, ‘한 차례에 한정하여’로 수정하도록 하고 있음
- ◆ 일본어 투 표현을 그대로 답습한 ‘한하여’ 표현을 ‘한정하여’로 수정할 것을 권

고함

해 당 조 항	권 고 내 용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관람료의 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제8조(관람료의 면제) ‘사람에 대하여는’을 ‘사람에게는’으로, 제9조(관람의 금지) ‘사람에 대하여는’을 ‘사람은’으로 수정
제10조(행위의 제한)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관람중지 및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행위의 제한)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는’으로 수정
<충청남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24조(징계 등) ① 기관장은 위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의결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체없이 징계절차에 회부하는 등 제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행위자에 대하여’ → ‘행위자에게는’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

-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9관」 정비 권고 용어에서는 일본어 투인 ‘~에 대하여’를 ‘~를’, ‘~에게’, ‘~는’, ‘~에 대하여’, ‘~로 하여금’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있음
- ◆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관람료의 면제)는 면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으로 수정하고, 제9조(관람의 금지)는 ‘제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으로 수정, 제10조(행위의 제한)는 대상이 사람일 경우 ‘○○(사람)에 대하여는’을 ‘○○(사람)에게는’으로 수정하도록 하고 있어 ‘사람에 대하여’를 ‘사람에게는’으로 수정하고, <충청남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에서 ‘대하여’가 필요한 경우 사용을 할 수 있지만, 일본어 투인 ‘대하여’를 사용하지 않고 ‘~에게는’으로 수정해도 문장에 지장이 없기 때문에 ‘행위자에게는’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해 당 조 항	권 고 내 용
<충청남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p>제24조(징계 등) ① 기관장은 위원회에서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의결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지체없이 징계절차에 회부하는 등 제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p>	<p>‘행위자에 대하여’ → ‘행위자에 게는’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p>

8) ‘사회적’을 ‘사회적으로’로 내용 추가 권고

해 당 조항	권 고 내 용
<도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제3조(정의)제1항 3. “문화영향평가”란 법 제5조제4항 및 「문화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 확산될 수 있도록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적 관점에서 도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사회적’→‘사회적으로’로 수정할 것을 권고

-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9판」 정비 권고 용어에서는 지나친 생략은 피하고, 필요한 내용이나 분장 성분을 쓰도록 하고 있음
- ◆ ‘사회적 확산’이라는 표현은 ‘으로’가 생략된 것으로 이해된다. 생략된 조사인 ‘으로’를 적어 줌으로써 그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을 것임.
- ◆ 따라서 ‘사회적 확산’ 뒤에 ‘으로’를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권고함

9) “금융기관”의 정의 추가 권고

해 당 조항	권 고 내 용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16호 생략)	제2조(정의) 17.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조항 추가 권고

- ◆ 이 조례에서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4조의 2(기금의 용도),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등), 제8조(자금의 차입 등), 제10조(기금의 사용 등)에서 사용되고 있음
- ◆ 법제처 「법령 입안·심사기준」 제3장 법령 입안과 관련한 헌법 원칙에서는 ‘명확성의 원칙’이란, 법률은 행정과 사법에 따른 법 적용의 기준이 되므로, 명확한 용어 등으로 분명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되어 있음
- ◆ 자치법규의 경우도 제·개정을 함에 있어서 그 의미와 내용이 명확해야 행위에 대해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음

- ◆ 만약에 제·개정 내용이 불명확하다면 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초대할 수 있음
- ◆ 도민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도민의 정보접근권 및 알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제2조(정의)에 “금융기관” 조항을 추가할 것을 권고함

10) 용어 순화 권고

해 당 조 항	권 고 내 용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⑥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사고가 있을 때에는’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용어 순화 권고

- ◆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9판」 정비 권고 용어에서는 ‘사고가 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혹은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순화하여 정비하게 되어 있음
- ◆ ‘사고가 있을 때’는 사고가 난 특정 상황에서만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로 오인할 소지가 있으므로 용어를 순화할 것을 권고함

11) ‘시행한다’를 ‘시행하여야 한다’로 내용수정 권고

해 당 조 항	권 고 내 용
<충청남도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지침>	
제23조(재발방지조치 등) ③ 기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사건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식조사 또는 조직문화 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2차 피해의 정도가 심한 경우 2. 2차 행위자가 여러 명인 경우 3. 1년에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를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혹은 ‘조직문화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

- ◆ 해당 조례는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과 처리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지침임
- ◆ 조례 제23조 제3항에 포함된 각 호에 대해 심각하다고 판단했음에도 조직문화 개선대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2차 피해 이후에도 피해가 다시 발생할 우려가 있음
- ◆ 아울러 타 광역지자체 또한 ‘시행한다’ 혹은 ‘시행하여야 한다’로 명시하며 인식조사나 조직문화 개선 등을 하도록 되어있음
- ◆ 따라서, ‘시행할 수 있다’를 ‘시행한다’ 혹은 ‘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 * 인천(시행한다) 대전(시행한다) 충북(시행하여야 한다) 전북(시행하여야 한다) 경북(시행한다)

12) 시행계획 수립 사항 구체적으로 추가

해 당 조 항	권 고 내 용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제6조(계획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수립 사항을 구체적으로 추가

- ◆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1항에서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음
- ◆ 실질적인 도민의 환경권 보장과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제6조(계획 수립 및 시행)에 종합적·체계적 시행계획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권고함

13) “폐기물에 관한 적용대상” 조항 추가

해 당 조 항	권 고 내 용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제8조(자원순환 성과관리) 도지사는 법 제15조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최종처분량의 비율인 최종처분율 2. 폐기물 발생량 대비 폐기물 순환이용량의 비율인 순환이용률	제8조(자원순환 성과관리)에 명시된 각호의 '폐기물에 관한 적용대상' 조항추가

- ◆ 환경부 지침 「시·도 자원순환 성과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적용대상 폐기물)에 따르면, 최근 3년간의 연평균 배출량을 기준으로 폐기물을 1천 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명시하고 있음
- ◆ 타 광역지자체(충청북도, 전라북도, 경기도) 자원순환 기본조례에서도 환경부 지침에 따라 폐기물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집중 관리하는 조문이 추가되어있음
- ◆ 따라서 제8조(자원순환 성과관리) 제1항에 대한 적용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헌법」 제35조에서 규정하는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폐기물에 관한 적용 대상 조항'을 추가할 것을 권고함

14) 품질표지 인증 우선구매 기관 추가

해 당 조 항	권 고 내 용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제12조(품질표지 인증 순환자원 등 우선구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제12조(품질표지 인증 순환자원 등 우선구매) 제2항에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 우선구매 기관을 추가 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 4.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는 충청남도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과 적절한 처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

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 위 조례는 지방공사와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내용만을 포함하였고, 별도의 법률에 근거한 기관에 대해서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 타 광역지자체(충청북도, 전라북도, 경기도)에서는 별도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료원과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 우선구매 대상기업을 확대하여 구매를 촉진 시킴으로써 폐기물 순환이용률 증가를 기대할 수 있고, 더불어 도민의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우선구매 대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할 것을 권고함

나. 기본권 제약-도민의 권리 제한

도민이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주어 이의신청인이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1) 도민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내용수정 권고

해 당 조 항	권 고 내 용
<충청남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안>	
제10조(안전감찰 실시절차) 제1항 5. 안전감찰관은 제4호의 자료를 작성할 때, 안전감찰을 받는 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줄 수 있고, 이를 위해 자료 작성 장소를 도 또는 시·군 별도의 공간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감찰 실시절차) 제1항제5호 안전감찰관은 제4호의 자료를 작성할 때, 안전감찰을 받는 자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자료 작성 장소를 도 또는 시·군 별도의 공간 등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신속히 안전감찰을 실시하여 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와 안전감찰을 받는 자의 정당하지 않은 작성 지연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 조례안 제13조(처분기준)를 살펴보면 안전감찰 결과에 따라 변상명령 요구, 징계 또는 문책 요구, 시정 요구, 경고 요구, 주의 요구, 개선 요구, 고발 등의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요구할 수 있어 안전감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이 크므로, 안전감찰을 받는 사람에게 확인서, 질문서, 문답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보장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고 방어권을 보장해줘야 함
- ◆ 다만, 부서 의견 중 감찰 진행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단서 조항을 삽입할 수 있음

2) 이의신청 기간 수정

해 당 조 항	권 고 내 용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제5조(이의신청) 신청자는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급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의신청기간 수정 7일 → 60일

- ◆ 이의신청은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의신청 기간은 신청인이 이의신청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기간이어야 함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에서는 민원인이 60일 이내에 법정 민원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음
- ◆ 본 시행규칙 또한 생활지원비, 명예 수당, 장제비 지급업무를 포함하기 때문에 법정 민원에 속함

다. 인권침해-특정 성별 편중 방지

특정 성별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비율이 명시되지 않아 비율 명시를 개선 권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특정 성별이 배제되어 차별받는 것을 방지할 것을 권고했다.

- 성비 균형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

해 당 조 항	권 고 내 용
<충남미술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성별을 고려하여”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문구 수정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문구 수정

해 당 조 항	권 고 내 용
<p>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며,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한다.</p>	
<p><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p>	
<p>제4조(투자유치실무위원회) ①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0항에 따른 투자유치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문구 수정</p>
<p><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p>	
<p>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로 한다.</p>	<p>제6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로 하며 이사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p>
<p><충청남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p>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p>
<p><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p>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p>
<p><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안></p>	
<p>제6조(임원 등) ① 재단의 임원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임원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재단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임원으로 두며,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p>	<p>‘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 추가</p>

해 당 조 항	권 고 내 용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제25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충청남도청소년대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한다.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 추가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⑧항 생략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항 추가

- ◆ 특정 성별에 대한 구체적 비율 명시 필요
- ◆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결정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제2항에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해당 소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르면,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 ◆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특정 성별이 배제되어 차별 받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임
- ◆ 따라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 편중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규정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라. 인권침해-차별적 용어 사용

‘보좌’, ‘~자’, ‘이상 행동’, ‘최종학력’, ‘보좌’, ‘심신 장애’ 등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용어와 일본어 한자어인 ‘~자’의 표현이 ‘놈’이라는 뜻으로 ‘사람’

으로 용어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1) “보좌” 용어 삭제 권고

해 당 조 항	권 고 내 용
<충남미술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 ②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안>	
제8조(위원장등의 임기와 직무)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장등의 임기와 직무) 제3항 ‘위원장을 보좌하며,’ 문구 삭제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32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제3항 ‘위원장을 보좌하며’ 문구 삭제

- ◆ 보좌는 “상관을 도와 일을 처리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
-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서로 협력해야 하는 평등한 관계임에도 ‘보좌’는 상하관계를 내포하고 있어 위원회 운영 취지나 인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위원장을 보좌하며’ 문구를 삭제 권고함

2) “자”를 “사람”으로 용어 수정 권고

해 당 조 항	권 고 내 용
<충남미술관 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자” ⇨ “사람” “필요한 자를” ⇨ “필요한 사람을”으로 수정
제10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필요한 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해 당 조 항	권 고 내 용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제2항 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의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p> <p>제3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p>	<p>“자”를 “사람”으로 수정</p>
<충청남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안>	
<p>제10조(안전감찰 실시절차) 제1항 2. ----- 안전감찰을 받는 자 -----</p> <p>제10조(안전감찰 실시절차) 제1항 5. ----- 안전감찰을 받는 자 -----</p> <p>적극행정면책 안내서 1. 신청권자 ○ 안전감찰을 받은 자 본인</p>	<p>“자”를 “사람”으로 수정</p>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p>제13조(사용허가) 단지 내 시설물 및 장소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p> <p>제14조(허가절차 등) ① 시설물 사용 및 장소사용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기간 등을 기재한 후 사용일 14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p> <p>제16조(사전협의)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행사 및 촬영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및 행사차량, 물품 반입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p> <p>제17조(사용료) ① 단지의 시설물 및 장소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를 사용일 전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p>	<p>“자”를 “사람”으로 수정</p>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p>제2조(생활지원비 지급) ㉟ 시장군수는 조례 제8</p>	<p>신청자 → 신청인으로 수정</p>

해 당 조 항	권 고 내 용
<p>조에 따라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이하생략)</p> <p>제4조(장제비 지급) ③ 시장·군수는 제2항에 따라 장제비 지급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이하생략)</p> <p>제5조(이의신청) 신청자는 지급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하생략)</p>	
<p><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p>	
<p>제6조(공동상표 사용권의 신청)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공동상표 사용권의 부여) ③ 공동상표 사용 신청에 대해 부적합 통지를 받은 자(신청인 본인에 한함)가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p> <p>제9조(공동상표의 사용 범위) ①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는 상표를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인쇄 또는 스티커로 부착하여 출하할 수 있다.</p>	<p>[권고내용] 내용 수정 권고</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6조(공동상표 사용권의 신청)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수정 2. 제7조(공동상표 사용권의 부여) 부적합 통지를 받은 ‘자’를 부적합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 수정 3. 제9조(공동상표의 사용 범위)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를 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람’으로 수정

- ◆ “자(者)”는 일본식 한자어이며 ‘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
- ◆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제9판)」에 의하면 ‘자’가 ‘사람’만을 의미할 때는 ‘사람’으로 고쳐 쓰게 되어있음
- ◆ 아울러, 제4조(장제비 지급) 제2항 제5호에서도 화장(매장) 증명서에 관해서, 별지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서식에서도 ‘신청인’으로 표현하고 있어 통일성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도민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음
- ◆ 따라서, 사람만을 표현하는 ‘인(人)’또는 ‘사람’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마. 인권침해-특정 집단 배제

특정 집단이 배제되어 차별받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특정 집단을 포함하여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1) ‘장애’, ‘국적’ 내용 추가 권고

해 당 조 항	권 고 내 용
<도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제3조(정의)제1항 2. “도민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모든 도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장애’, ‘국적’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문화·예술 활동의 차별금지)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해야 한다고 되어있음
- ◆ 「문화기본법」 제7조 제4호에 따르면 차별 없는 문화복지가 증진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적이 다르더라도 문화 향유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함
- ◆ 따라서, “도민문화권” 정의 내용에 ‘장애’와 ‘국적’을 포함할 것을 권고함

해 당 조 항	권 고 내 용
<도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제7조(도민문화권 보장 및 증진) ① 도지시는 도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계층, 연령, 지역, 성(性), 인종, 종교, 국적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장애’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고

-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문화·예술 활동의 차별금지)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

- ◆ 따라서, 제7조 도민문화권 보장 및 증진 내용에 ‘장애’를 포함할 것을 권고함

2) 외부 위원 참여 및 수당 지급 관련 수정 권고

해 당 조 항	권 고 내 용
<충청남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안>	
<p>제14조(처분심의) ① 도지사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전정책과장, 안전감찰관 및 도 소속 공무원 등 5명 이상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운영해야 한다.</p>	<p>- “안전정책과장, 안전감찰관 및 다른 부서 공무원과 외부 위원을 지명 또는 위촉하여”등 다른 부서 공무원, 외부 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규정으로 수정</p> <p>- “④ 제1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하는 외부 위원에게는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항 삽입</p>

- ◆ 안전감찰 결과에 따른 처분 조치의 적정성 심의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법이 정해놓은 절차를 잘 지켜야 하며, 관련된 당사자 모두의 이야기를 들어봐야 하는 등 무엇보다 공정하게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함
- ◆ 이에, 안전감찰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다양성과 민주성,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
- ◆ 이에 해당 규정에 ‘다른 부서 공무원’과 ‘외부 위원’을 참여시키고, 외부 위원 참여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할 것을 권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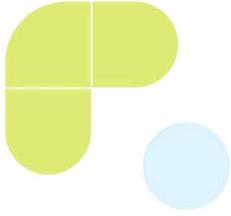
5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추진실적

연번	해당부서	검토조례안	검토결과
1	문화정책과	충남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개선권고 /권고수용
2	에너지과	충청남도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 전부개정안	원안동의
3	건설정책과	충청남도 건설공사감독관 복무규정 폐지규정안	원안동의
4	투자입지과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개선권고 /권고수용
5	투자입지과	충청남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개선권고 /권고수용
6	세정과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7	식량원예과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원안동의
8	감사위원회	충청남도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선권고 /권고수용
9	운영지원과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10	안전정책과	충청남도 재난관리 의무 위반 처분에 관한 규칙 제정안	개선권고 (부분수용)
11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원안동의
12	사회복지과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규칙안	원안동의
13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14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동의
15	세정과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16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17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원안동의
18	관광진흥과	충청남도 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정안	개선권고 /권고수용
19	세정과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20	문화정책과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동의
21	기후환경정책과	충청남도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22	인사과	충청남도 주요업무 평가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동의
23	건설정책과	충청남도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개선권고 /권고수용
24	체육진흥과	충청남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연번	해당부서	검토조례안	검토결과
25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동의
26	운영지원과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27	운영지원과	충청남도 사무인계인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원안동의
28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29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동의
30	운영지원과	충청남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동의
31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선권고 /권고수용
32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규칙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33	투자입지과	충청남도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개선권고 /권고수용
34	자치경찰행정과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인사규정 제정안	원안동의
35	환경안전관리과	충청남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안	개선권고 /권고수용
36	소상공기업과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규칙 일부개정안	개선권고 /권고수용
37	사회복지과	충청남도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	개선권고 /권고수용
38	체육진흥과	2027 하계U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	원안동의
39	건축도시과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40	자치경찰행정과	충청남도자치경찰위원회 감사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한 규칙안	원안동의
41	교육법무담당관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원안동의
42	예산담당관	충청남도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원안동의
43	예산담당관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원안동의
44	수산자원과	충청남도 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원안동의
45	예산담당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및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폐지규칙안	원안동의
46	충남도립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발전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정안	개선권고 /권고수용
47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48	교육법무담당관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49~5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일괄개정규칙안(4개 조례 시행규칙 등)	
49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원안동의
50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원안동의

연번	해당부서	검토조례안	검토결과
51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사무인계인수 규칙	원안동의
52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원안동의
(53~7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일괄개정조례안 (25개 조례 개정)	
53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54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55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원안동의
56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통합제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원안동의
57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58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원안동의
59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외국인투자 촉진 조례	원안동의
60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61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조례	원안동의
62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 조례	원안동의
63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원안동의
64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	원안동의
65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및 관리 조례	원안동의
66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67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원안동의
68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원안동의
69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원안동의
70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71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72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원안동의
73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74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도청 이전 신도시 보상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원안동의
75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76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원안동의
77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건설공사 품질관리 조례	원안동의
78	감사과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동의
79	문화정책과	충청남도 도민문화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안	개선권고 /권고수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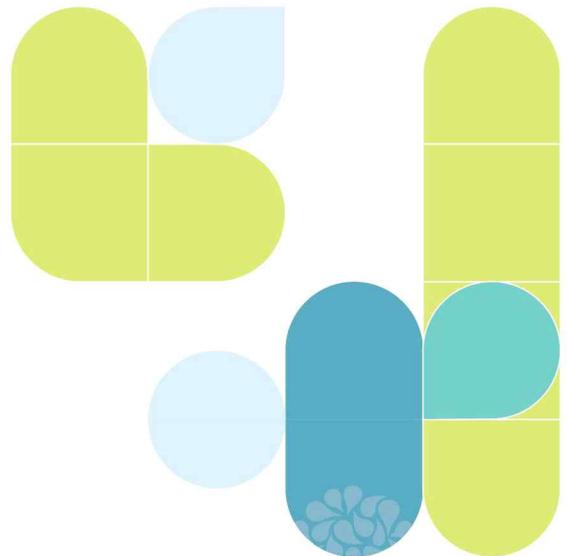
연번	해당부서	검토조례안	검토결과
80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개선권고 /권고수용
81	문화유산과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선권고 /권고수용
82	교육법무담당관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83	세정과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84	농업정책과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선권고 /권고수용
85	교육법무담당관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조례	원안동의
86	중앙협력본부	충청남도 중앙협력본부 근무공무원 주택보조비 지원 규정 제정안	원안동의
87	여성가족정책관	충청남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정안	개선권고 /권고수용
88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89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일부개정안	원안동의
90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민주화운동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개선권고 /권고수용
91	식량원예과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선권고 /권고수용
92	투자입지과	충청남도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원안동의
93	교육법무담당관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동의
94	예산담당관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개선권고 /권고수용
95	공동체정책과	충청남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원안동의
96	예방안전과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동의
97	자치행정과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동의
98	건축도시과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개정안	원안동의
99	정책기획관	충청남도지사 공약사항 관리 규칙안 제정안	원안동의
100	인사과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개정안	원안동의



제 4 장

2021 충청남도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

1. 평가개요
2. 추진경과
3.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충남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운영)
4.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북한이탈주민자녀 사회적응프로그램)
5.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4 2021 충청남도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

1 평가개요

- 평가대상 :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에서 선정한 시책 등 3개분야

인권영향평가 평가 대상	담당 부서
충남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운영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북한이탈주민 자녀 사회적응 프로그램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팀

- 평가시기 : 2020년 10월~12월
- 평가방법 : 각 시책별 평가단 구성 후 평가틀을 마련하여 평가 진행
- 평가단구성 : 인권위원회 위원, 도민인권지킴이단, 전문가, 당사자 등으로 구성
- 추진근거 :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9조, 제14조, 제19조

2 추진경과

- '21. 1. 20. 「2021 도민인권 증진시책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실국별 시행계획서 제출 협조 요청(인권증진팀)
- '21. 6. 21. 2021년 도민인권 증진시책 시행계획 확정·시행(인권증진팀)
- '21. 7. 22.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에서 평가대상 선정
 - 충남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운영
 - 북한이탈주민 자녀 사회적응 프로그램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 '21. 7. 23. ~ 9. 27. 추천된 시책 및 평가대상 담당부서 협의

- '21. 9. 28. 2021 시책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수립
- '21. 9. 29. ~ 10. 14. 시책 등 인권영향 평가단 구성
 - 수어통역 7, 북한이탈 6, 노인맞춤 7
- '21. 10. 15. 시책 인권영향평가 워크숍 및 1차 회의
- '21. 10. 15. ~ 11. 29. 평가단 운영
- '21. 12. 13. 2021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회

3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충남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운영)

가. 평가대상

- 평가시책 : 충남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운영
- 담당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
- 평 가 단 : 7명(인권위원, 인권지킴이단, 전문가, 당사자, 인권센터)
- 구성방법 : 인권위원(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인권지킴이단(신청), 전문가(시책부서 추천)

나. 평가과정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에서 평가대상 시책 선정 후 워크숍 및 1차 회의(21.10.15)에서 시책인권영향평가 교육, 2021년 시책 인권영향평가 보고 등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어서 평가단 1차 회의를 했다. 1차 회의에서는 단장 및 서기선출, 담당 부서 사업설명을 진행하여 평가단이 평가표를 만들기에 앞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2차 회의에서 사업 수행 시 어려움을 파악한 후 평가 기준 논의, 3차 회의에서 평가점검표 수정사항 점검, 4차 회의에서 당사자, 종사자, 기관 담당자 면담을 실시하여 개선 필요 여부 확정 논의를 했으며, 5차 회의에서 평가 결과를 확인하여 평가를 마무리하였다.

다. 추진일정

- '21. 10. 15.(금) 평가단 워크숍 및 1차 회의
: 단장 및 서기 선출, 담당 부서 사업설명
- '21. 10. 25.(월) 2차 회의 : 평가 기준 논의
- '21. 11. 8.(월) 3차 회의
: 평가점검표 항목별 수정사항 점검
: 평가표를 토대로 평가 및 점검내용 논의
- '21. 11. 16.(화) 4차 회의
: 당사자, 종사자, 기관 담당자 면담 실시
: 평가표 개선 필요 여부 확정 논의(면담 결과 자유토론, 자료 검토 등)
- '21. 11. 29.(월) 5차 회의
: 평가 결과 확정

라. 평가점검표

인권분야	세 부 내 용	개선필요여부	
이용자	1. 위급상황 시 언제(24시간/주말 또는 공휴일), 어디서든(충남 전 지역) 통역을 지원받을 수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 이용자가 원하는(희망) 시간 및 분야에 통역을 지원받을 수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3. 수어 통역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이 보장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4. 이용자에게 필요한 다양한 직업적응훈련을 받는데 제약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5. 이용자가 종사자로부터 인권침해를 입을 요소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종사자	1. 수어통역센터 종사자의 노동환경에서 침해받을 만한 요소가 있는가? (근무시간, 근무방식, 계약기간, 급여, 4대 보험, 복지 등)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 종사자가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상담·구제 절차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3. 종사자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4. 종사자가 이용자에게 인권침해를 입힐 요소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5. 업무와 관련한 인권지침(매뉴얼)이 교육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수어통역 센터지원 본부 운영	1. 누구나 수어교육과 상담사례관리사업, 지원사업 등 직업훈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2.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3. 직원 채용 시 고용상의 차별이 있는가?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출신지역 등)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인권분야	세 부 내 용	개선필요여부	
	4. 이용자의 만족도 조사 또는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5. 업무와 관련한 인권지킴(매뉴얼)이 구비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6. 이용자와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와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7. 시·군과의 소통 및 지원체계는 잘 이루어져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8. 수어통역 지원에 대한 모니터링(점검)을 실시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9. 인권침해 및 차별적 행위가 있을 경우 구제 절차를 안내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마. 항목별 평가내용 및 개선방안

1) 이용자 분야

가) 평가내용

- 야간에는 농인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었는지 않아 일과시간(9시 ~18시) 이후 위급상황 시 지원받기 어려움
- 이용자가 통역사 시간에 맞춰 지원받아야 하고 급한 상황에서도 기다려야 하며, 충남 소재의 병원에서도 수어 통역이 가능한 곳이 없음
 - * 전문통역사가 부족하여 통역의 질이 높지 않고, 통역사 1인당 담당해야 하는 농인이 과중 되어있음
- 통역 일지 시스템에 개인정보와 상담 내역이 들어가고, 열람 자격이 있는 사람은 모두 접근이 가능하므로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보장되기 어려움
- 취업과 연계 가능한 직업적응훈련이 이뤄지고 있지 않음
- 상담 관련한 매뉴얼 및 운영지침이 없기 때문에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음

나) 개선방안

- 농인들이 일과시간 이후 위급상황 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 마련과 그에 따른 인력 지원이 필요함
- 시·군과 협력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전문성 높은 통역사 배치가 필요함
- 통역 이용자의 개인정보 동의 후 정보수집 및 관리 할 수 있도록 지침 마련이 필요함
- 이용자가 다양한 직업적응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개설과 취업 연계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를 위해 사업비 예산을 책정하여 이용자의 알권리를 보장해야 함

- 이용자가 인권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마련해야 함

2) 종사자 분야

가) 평가내용

- 초과근무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편성된 예산안에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에 어려움이 있음
- 종사자가 인권침해를 당했을 경우 농아인협회 중앙회에 제보할 수 있으나, 자체 상담 및 구제 절차가 없음
- 법정 의무교육 실시로 종사자 인권교육을 대면으로 실시하고 있음
- 종사자의 통역능력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업무와 관련한 인권지침 매뉴얼이 없으며, 교육되고 있지 않음

나) 개선방안

- 종사자가 시간 외 근무 시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종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운영 규정에 포함해야 함
- 통역의 정확도와 질을 높일 수 있는 수어통역사 역량강화 교육 확대 필요
- 인권 보호 지침과 구제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명문화하여 종사자에게 교육해야 함

3) 충남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운영 분야

가) 평가내용

- 유관기관 홈페이지, 14개 시·군 지회, SNS 등 수어 교육, 상담사례관리사업, 지원사업 등을 통해 농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음
- 종사자 욕구가 반영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없어 개인이 사비를 들여 배운다는 종사자의 의견이 있었고, 보수교육과 역량 강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전년도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과목을 편성하고 있으나 예산 초과 시 사비를 들여 배우는 경우도 있다는 관리자의 의견이 있었음
- 직원 채용 공고에서는 운영 규정에 포함된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고, 이력서에는 채용 상의 인권침해 요소가 발견되지 않음
- 개별 사업 종료 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실태조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음
- 업무와 관련된 인권지침 매뉴얼이 구비되어있지 않으며, 종사자에게 교육되고 있지 않음
- 이용자와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구두로만 이뤄지고 있으며 관

련 절차나 규정이 마련되어있지 않음

- 14개 시·군 지회와 1년에 4회 정기회의를 가지고 있으며, 업무협력은 지원 필요시 공문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
- 이용자에게 수어 통역 지원 후 모니터링(점검) 절차는 마련되어있지 않음
- 인권침해 및 차별적 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가 없음

나) 개선방안

- 보수교육 및 역량강화 교육 이외에 종사자 개인이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 이용자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농인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및 통계자료의 관리가 필요함
- 업무와 관련한 인권지침(매뉴얼)을 마련하여 인권적 업무 운영이 필요함
- 이용자와 종사자의 의견 수렴이 구두로 이뤄짐으로 인해 반영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적극적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용자가 수어 통역을 지원받은 후 불편 사항, 추가 필요사항 등 점검할 수 있는 절차 마련 필요함
- 이용자, 종사자가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했을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 마련과 이에 따른 안내가 필요함

바. 평가 종합의견

- 본 평가를 통해서 먼저 한국수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의 일상생활, 경제생활 그리고 위급상황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는 현실을 깨달았으며, 「충남 농인」을 지원하는 충남본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과 그 활동을 넓혀야 한다는 것에 공감함
- 충남본부의 이용자인 「충남 농인」은 특히 위급상황 시 언제(24시간, 공휴일 포함) 어디서든 통역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련 「위급상황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또한 경제생활을 위하여 다양한 직업 적응훈련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비장애인이 받는 직업훈련에 버금갈 수 있는 「수요에 기반한 직업 적응훈련」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협력하여 「충남 농인」의 인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함

- 충남본부에 재직하는 종사자는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근무시간과 급여를 보장 받을 수 있어야 함. 보조금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장애인단체가 모두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충남본부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야에서 일하기 때문에 보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종사자의 노동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충남본부의 종사자는 인권의 최일선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법정 인권교육에 그치지 말고 인권지킴(매뉴얼)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함
- 충남본부는 이용자와 종사자에 대해서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개선사항을 협의해서 「충남 농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본부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함. 이를 위하여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태조사, 의견 수렴 등이 수행되어야 하고, 종사자에 대한 역량 강화교육과 모니터링 그리고 이용자와 종사자 간의 인권침해 및 차별적 행위가 있을 경우에 대비한 구제 절차 등을 마련해서 시행해야 함
- 마지막으로 한국수어를 제1 언어로 사용하는 「농인」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위급상황 시 통역 서비스를 24시간 지원받는 것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일상의 의사소통이 어려운 「충남 농인」의 긴박한 현실에 대한 충분한 인식 하에, 충청남도청과 충남본부가 협력해서 「충남 농인」의 기본적인 인권 확보에 노력해야 함

사.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명단

순번	성명	소속	직책	비고
1	강봉준(단장)	충남강소기업인협동조합	이사장	인권위원
2	전재하	(사)충청남도장애인단체연합회	회장	
3	김유태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집행위원장	인권지킴이단
4	박수진(서기)	충청남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장	전문가
5	박기남	충남인권교육협의회	공동대표	인권단체
6	김성완	충청남도수어통역센터지원본부	본부장	당사자
7	안성대	충청남도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인권센터

4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북한이탈주민자녀 사회적응프로그램)

가. 평가대상

- 평가시책 : 북한이탈주민자녀 사회적응프로그램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남북교류팀
- 평가단 : 6명(인권위원, 인권지킴이단, 전문가, 당사자, 인권센터)
- 구성방법 : 인권위원(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인권지킴이단(신청), 전문가(시책 부서 추천)

나. 평가과정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에서 평가대상 시책 선정 후 워크숍 및 1차 회의(21.10.15)에서 시책인권영향평가 교육, 2021년 시책 인권영향평가 보고 등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어서 평가단 1차 회의를 했다. 1차 회의에서는 단장 및 서기선출, 담당 부서 사업설명을 진행하여 평가단이 평가표를 만들기에 앞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2차 회의에서 사업 수행 시 어려움을 파악한 후 평가 기준 논의, 3차 회의에서 수행기관 사업 담당자와 질의응답을 실시한 후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논의를 했으며, 4차 회의에서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 평가를 마무리하였다.

다. 추진경과

- '21. 10. 15.(금) 평가단 워크숍 및 1차 회의
: 단장 및 서기 선출, 담당 부서 사업설명
- '21. 10. 28.(목) 2차 회의 : 평가 기준 논의
- '21. 11. 11.(목) 3차 회의
: 수행기관 사업 담당자 질의응답,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논의
- '21. 11. 26.(금) 4차 회의 : 평가 결과 확정

라. 평가점검표

평가 항목	해당여부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가족통합 서비스 참여자 분야					
1. 사업대상들에게 모집에 대한 안내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				
2. 사업참여자의 개인정보가 충분히 보호되고 있는가?	√				
3. 사업에 대한 참여 기간은 충분한가?		√			
4. 사업 참여과정에 본인의 의견이 자유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화 되었는가?	√				
5. 사업 참여자들의 인권보호 지침이 마련되어 있는가?		√			
6. 사업 참여자의 인권침해 및 차별적 행위(언어와 태도 등)에 대한 개별 구제제도가 갖추어져 있는가?		√			
7. 사업 참여자에게 인권침해 및 차별적 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가?		√			
8. 사업 참여자들이 개인 및 집단 활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지침이 구비되어 있는가?			√		
통합지도사 분야					
1. 통합지도사는 사업참여자들에게 인권관점을 잘 반영하여 지도하는가?	√				
2. 사업 참여자의 개별 특성을 적극 반영한 교육과정이 잘 구축되어 있는가?	√				
3. 통합지도사 채용에 전문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있는가?	√				
4. 사업 참여자의 특성파악을 위한 이해력 향상 교육과정을 실시하고 있는가?		√			
5. 통합지도사 인권교육을 체계적으로 잘 진행하였는가?		√			
6. 통합지도사 역량강화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는가?	√				
7. 통합지도사 인권보호를 위한 개별 지침을 갖추고 있는가?		√			
8. 통합지도사의 인권침해 및 차별적 행위(언어 및 태도)에 대한 구제 제도가 갖추어져 있는가?		√			
9. 통합지도사의 인권침해 및 차별적 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가?		√			
10. 통합지도사 활동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였는가?	√				

평가 항목	해당여부				
	매우 그렇다	약간 그렇다	보통 이다	별로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수행기관 분야					
1. 사업수행과정에서 인권 차별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가?					√
2. 사업내용은 사업대상자들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북한 이주민 자녀의 학습 수준을 파악 등)	√				
3. 사업 담당자의 인권침해 및 차별적 행위(언어 및 태도 등)에 대한 구제제도가 갖추어져 있는가?			√		
4. 사업 담당자에게 인권침해 및 차별적 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를 충분히 안내하고 있는가?			√		
5. 사업서비스 전 과정에 대한 점검과 평가(모니터링)는 시행하고 있는가?	√				
6. 사업서비스 전 과정에 대한 점검과 평가(모니터링)를 위한 지표는 마련되어 있는가?		√			
7. 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가?	√				
8. 사업 참여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들을 차기 사업에 반영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가?	√				
9. 사업예산이 운영과정에서 적정하게 잘 배분되었는가?				√	
10. 사업 전체의 업무량에 대비하여 사업 관련 인적 자원(담당자 수)은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 ?				√	

마. 항목별 평가내용 및 개선방안

1) 가족통합 서비스 참여자 분야

가) 평가내용

- 모집 안내는 지역사회와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5개 지역에 한정하여 모집하는 데 그쳐, 시군 전 지역 확대가 필요함
-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관리하고 있음
- 한 해 동안 서비스 참여 기간은 약 7개월로 사업 참여 기간이 짧음, 적어도 9~10개월이 필요함(2~3개월은 휴식 기간)
- 사업 참여 중 참여자의 의견은 사업 담당자에게 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며 심리전문가를 통해 상담 진행하고 있음
- 사업 참여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 인권침해 및 차별적 행위에 대한 개별 구제제도는 별도 명문화되어 있지 않음

- 사업 참여자에게 인권침해 및 차별적 행위에 대한 구제 절차는 ‘사업홍보 안내지’를 활용하고 있으며, 고충 및 애로사항은 수행기관 담당자를 통해 상담하고 있음
- 예산상 문제로 사업 참여자들의 안전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에는 가입하지 않음

나) 개선방안

- 도내 15개 시군 중 5개 지역만 모집이 진행되고 있어, 그 외 지역의 북한이주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 안내 및 사업추진을 충남 전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공모 신청 및 보조금 교부 기간을 최소화하여 사업 참여 기간을 늘려야 함
- 사업 참여자의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 절차 및 전문 담당자 필요함
- 사업 참여자의 인권 보호 지침과 구제제도를 마련하여 명문화하고 각종 동의서에 인권 보호 안내를 추가하여 알려야 함
- 사업 참여자의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 필요함

2) 통합지도사 분야

가) 평가내용

- 통합지도사를 대상으로 사업 수행 초기 사업 참여자 이해 교육을 8시간 실시하고 있으며, 월례 회의 시 사례 공유를 통해 북한이주민 이해 교육을 진행하여 인권 관점을 적극 반영하여 지도하도록 교육하고 있음
- 북한이주민에 대한 이해가 높은 강사를 섭외하여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 사업 참여자의 개별 특성이 잘 반영되고 있음
- 통합지도사 채용 시 서류전형과 대면 면접을 통해 전문성을 검증하고 있음
-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개인정보 보호 내용을 포함하는 등 사업 참여자 이해 교육내용 중 일부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통합지도사 역량 강화교육은 사업 수행 초기에 의례적으로 사전 이해 교육 1회, 슈퍼비전 1회 진행하고 있으나, 정기적인 교육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통합지도사 인권 보호를 위한 개별 지침, 통합지도사의 인권침해 및 차별적 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는 규정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았으나, 구제 절차는 안내하고 있음
- 통합지도사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음

나) 개선방안

- 인권 관점으로 서비스하기 위해 통합지도사 대상으로 인권 강사로부터 인권 교육을 시행해야 함
- 통합지도사 역량 강화를 위해 교수법,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원만한 신뢰감 형성을 위한 슈퍼비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기적인 역량 강화교육이 필요함
- 통합지도사의 인권 보호 지침과 구제제도를 마련·명문화하고 이를 충분히 알려야 함

3) 수행기관 분야

가) 평가내용

- 사업수행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사업명에 ‘이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북한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어감을 심어주고 있음
- 사업 수행 전 가정 방문으로 북한 이주민 자녀의 학습 수준을 파악하여 맞춤형 학습지도를 하고 있음
- 사업 담당자의 인권침해 및 차별적 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는 규정화되어 있지 않았으며, 안내되고 있지 않음
- 사업서비스 전 과정에 대한 점검과 평가(모니터링)를 위한 지표는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나, 사업결과보고회를 통해 사업에 대한 점검과 평가를 진행하고 있음
- 사업 참여에 대한 사전·사후 척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 종결 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
- 매해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수행기관 변경으로 연속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기 다소 어려움
- 총사업비 구성은 인건비 5.7%, 사무비 4.3%, 사업비 90%로 예산 자체가 사업비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예산편성 자체가 용이하지 않음
- 사업내용은 ‘찾아가는 가족통합교육’, ‘개인 및 가족 상담’, ‘집단프로그램’, ‘자조 모임’, ‘역량 강화교육 및 슈퍼비전’, ‘유관 기관 간담회 및 월례회

의’, ‘사업 참여자 및 통합지도사 상시적 의견 수렴’ 등 사업량에 대비 사업관리자에 대해 <하루 3시간> 책정된 근로시간으로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으며, 추가 노동이 발생하고 있음

나) 개선방안

- 법정 용어인 ‘북한이탈주민’보다 ‘북한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업 대상자(집단)들이 원하므로, 용어 개정작업을 통한 북한이주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사업 주관 및 책임(담당)자의 인권침해 및 차별적 행위에 대한 구제제도를 마련하고 명문화해야 함
- 사업 담당자는 사업 참여자와 통합지도사의 상시적 의견 수렴 및 빈번한 상담으로 업무소진이 초래되고 되어,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 발생 가능성에 대한 구제 절차에 대해 충분히 안내할 필요가 있음
- 사업서비스 전 과정에 대한 객관적 점검과 평가(모니터링)를 위해 세부적인 지표를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매년 체계적인 사업 내실화를 위해 수행기관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체계적인 만족도 조사 결과 반영절차가 필요함
- 과업 수행 주체는 ‘사람’이므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노력과 열정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사업 담당자의 노동권을 보호해야 함
- 결론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적정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비에 집중된 예산을 인건비와 사무비로 적절히 편성하여, 사업량 대비 적정한 업무시간을 확보한 후 안정적인 사업 수행과 성과를 담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바. 평가 종합의견

- 사업 수행 전 가정 방문하여 북한 이주민 자녀의 학습 수준을 파악하고 사업 초기 통합지도사 대상으로 북한 이주민 이해 교육을 시행하는 등 북한 이주민의 특성을 잘 반영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사업 참여자, 통합지도사, 사업 담당자를 위한 인권 보호 지침 및 구제제도를 마련하여 명문화하고, 각종 동의서에 인권 보호 안내를 추가하는 등 충분히 안내해야 함
- ‘북한이탈주민’ 보다 ‘북한이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북한이주민에 대한 부

정적 인식을 개선해야 함

- 주어진 사업량에 비해 하루 3시간으로 책정된 업무시간이 부족하여 추가 노동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사업 담당자의 노동권을 보호해야 함. 이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고 사업비에 집중된 예산을 인건비와 사무비로 적절히 배분하고, 사업량에 비해 부족한 업무시간을 늘려 사업 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함
- 사업 참여자(교육대상자)와 통합지도사의 의견은 사업 담당자(주관기관)가 상담 형태로 상시로 수렴하고 있으나, 1명의 사업 담당자가 사업 수행과 병행하고 있어 과부하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 절차 및 별도의 전문 담당자가 필요함
- 도내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5개 지역(천안시 등)에 홍보하고 있으나, 북한 이주민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내 15개 전체 시·군으로 모집 안내를 확대해야 함
- 서비스 참여 기간이 7개월로 짧고 만족도 조사 결과가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되지 못하므로 공모·보조금 교부 기간을 최소화하고 수행기관이 바뀌더라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함
- 통합지도사는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사업 참여자는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있지 않으므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사업 참여자도 상해보험 가입이 필요함
- 통합지도사 역량 강화를 위해 인권 강사로부터 인권교육 시행, 교수법, 관계 형성을 위한 교육, 원만한 신뢰감 형성을 위한 슈퍼비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기적인 역량 강화교육이 필요함
- 사업서비스 전 과정에 대한 점검과 평가(모니터링)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위한 지표는 없으므로 객관적 점검과 평가(모니터링)를 위한 지표를 마련해야 함

사.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명단

번호	성명	소속	직책	비고
1	우정민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상담팀장	인권위원
2	우삼열	아산이주노동자센터	소장	
3	안임숙	고령사회를이롭게하는 충남여성연합	공동대표	인권지킴이단
4	김진옥(단장)	대전대학교	교수	전문가
5	김주연(서기)	(사)중부미래정책연구원 이음	통합치유 사무국장	당사자
6	장인선	충청남도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인권센터

5 시책 인권영향평가 결과(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가. 평가대상

- 평가시책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 담당부서 : 노인복지과 노인일자리팀
- 평가단 : 7명(인권위원, 인권지킴이단(당사자 포함), 전문가, 인권센터)
- 구성방법 : 인권위원(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인권지킴이단(신청), 전문가(시책부서 추천)

나. 평가과정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에서 평가대상 시책 선정 후 워크숍 및 1차 회의(21.10.15)에서 시책인권영향평가 교육, 2021년 시책 인권영향평가 보고 등 워크숍을 진행하고 이어서 평가단 1차 회의를 했다. 1차 회의에서는 단장 및 서기선출, 담당 부서 사업설명을 진행하여 평가단이 평가표를 만들기에 앞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2차 회의에서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 수행 시 어려움을 파악한 후 평가 기준 논의, 3차 회의에서 담당 부서 자체평가 후 질의응답 하여 평가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였고, 4차 회의에서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 평가를 마무리하였다.

다. 추진경과

- '21. 10. 15.(금) 평가단 워크숍 및 1차 회의
: 단장 및 서기 선출, 담당 부서 사업설명
- '21. 10. 28.(목) 2차 회의 : 광역기관 현장 방문, 평가 기준 논의
- '21. 11. 11.(목) 3차 회의
: 담당부서 자체평가 후 질의응답, 사업평가 및 개선방안 논의
- '21. 11. 23.(화) 4차 회의 : 평가 결과 확정

라. 평가점검표

분야	세 부 내 용	해당여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운영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목적에 맞게 광역기관이 운영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 충청남도는 수행기관 간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3. 충청남도는 광역지원기관과 15개 시·군 실무협의체가 잘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4. 수행기관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의 다양한 사업(프로그램)에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5. 수행기관은 대상자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생활지원사와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6. 수행기관은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사후관리를 진행한 후 차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분야	세 부 내 용	해당여부	
생활 지원사	1. 생활지원사에게 근로기준법은 적용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 생활지원사를 위한 인권매뉴얼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3. 원거리 서비스제공 시 생활지원사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4. 생활지원사는 인권교육을 받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5. 생활지원사를 위한 고충창구(담당)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6. 생활지원사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7. 생활지원사를 위한 특성화된 교육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8. 생활지원사들간의 정기적인 교류가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이용자	1. 이용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2. 이용자는 인권교육을 받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시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4. 이용자의 이동권이 보장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5.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에 따른 공공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6.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보호되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7.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이용자의 사생활은 보호되는가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input type="checkbox"/> 없음

마. 항목별 평가내용 및 개선방안

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

가) 평가내용

- 대상자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수행기관 사업 지원, 현황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음
- 광역 지원기관에서 수행기관 모니터링 진행 시 실무협의체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나, 수행기관 간 실무협의체가 구성된 시·군은 5곳에 불과함
- 충청남도가 수행기관 간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충청남도는 광역지원기관과 15개 시·군 실무협의체가 잘 운영되는지 점검하

여야 하나 15개 시·군 중 노인맞춤돌봄협의체가 구성된 곳은 2개 시·군에 불과함

- 충청남도가 실무협의체 운영을 점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서비스 제공계획의 타당성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례 실무회의를 운영하고 있음
- 사례 실무회의에 생활지원사의 참석이 가능하며, 수행기관은 이용자와 협의하여 대상자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음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외적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전담 사회복지사의 행정의 복잡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예외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가 드물어 이용자의 접근성 및 서비스 선택권이 제한적임
- 서비스 종결 후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인 경우 서비스 종결 후 최소 6개월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음

나) 개선방안

- 광역 지원기관은 요보호 대상자(치매, 자살 등) 발생 시 이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광역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함
- 충청남도는 수행기관 간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수행기관 간 실무협의체 구성을 15개 시·군으로 확대·강화하여야 함
- 충청남도는 광역 지원기관과 15개 시·군 실무협의체가 잘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노인맞춤돌봄협의체 운영을 15개 시·군으로 확대·강화하여야 함
- 이용자의 접근성 및 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담 사회복지사의 행정의 복잡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 사업 참여자의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고 있으나,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 절차 및 전문 담당자 필요함
- 사업 참여자의 인권 보호 지침과 구제제도를 마련하여 명문화하고 각종 동의서에 인권 보호 안내를 추가하여 알려야 함
- 사업 참여자의 각종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 필요함

2) 생활지원사 분야

가) 평가내용

- 생활지원사에게 근로기준법과 관계 법령, 정책, 내부규정이 적용되고 있음

- 본 서비스의 특성상 생활지원사를 위한 별도의 인권 매뉴얼이 필요함. 생활지원사를 위한 인권 매뉴얼이 별도로 존재하는 수행기관도 있지만, 인권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는 수행기관이 대다수임. 인권 매뉴얼이 없는 다수의 수행기관은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기관의 운영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생활지원사를 위한 별도의 인권 매뉴얼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원거리 서비스 제공 시 생활지원사에게 업무수행을 위한 월 교통비(10만원)가 지급되고 있음
-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 보호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생활지원사를 포함한 종사자를 위한 고충 처리 절차가 마련되어있으며, 정기적으로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 등이 진행되고 있음
- 생활지원사는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예기치 못한 다양한 상황 때문에 정서적 충격과 트라우마가 생길 우려가 있음
- 생활지원사를 위한 정서적 지원은 기관을 거쳐서 상담 및 지원을 받는 시스템임. 생활지원사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간담회, 심리지원 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신분 노출 및 고용상의 불이익 우려 등을 이유로 정서적 지원 이용률이 저조함
- 생활지원사 직무를 위한 필수교육과 선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생활지원사들 간의 정기적인 교류를 위한 간담회가 추진되고 있음

나) 개선방안

- 생활지원사를 위한 별도의 인권 매뉴얼을 마련하고, 생활지원사에게 인권 매뉴얼 안내 및 처리 절차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이용자나 이용자 가족의 과잉서비스 요구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매년 이용자나 가족에게 서비스 이용 안내 및 교육이 필요함
- 도시와 농어촌의 가구 간 거리의 차이를 고려하여 생활지원사 당 돌봄 인원의 조정 개선이 필요함
- 복지 사각지대 및 교통수단의 제약이 큰 지역의 경우 교통비의 차등 적용이 필요하며, 교통비 지급 기준을 거리 기준으로 변경하여 현실화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생활지원사의 업무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인권교육이 개설되어야 함
- 생활지원사의 정서적 지원은 기관을 거치지 않고, 생활지원사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생활지원사가 직접 상담 기관에 상담을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어야 함

- 지역의 심리상담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예방적·사후 집단상담프로그램을 통해 생활지원사의 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통합적 시스템이 필요함
- 생활지원사의 욕구 조사를 통한 기관·지역별 맞춤형 직무교육이 필요함

3) 이용자

가) 평가내용

- 이용자의 인권 보호 규정이 마련되어있으나 이용자나 가족들에게 이를 안내하고 있지 않음
- 연 1회 이상 이용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용자 인권교육을 생활지원사가 전담하고 있음
-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민원 처리 대장을 비치·운영하여 제기된 민원을 접수 및 처리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는 미흡함
-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외출 시 생활지원사가 동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농어촌 및 교통수단에 제약이 있는 이용자의 경우 서비스 제약이 많음
- 이용자의 요청 시 공공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공공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음
- 이용자의 개인정보 등 비밀보장이 보호되고 있으며,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수행기관 내 캐비닛에 잠금장치 후 보관하고 있음

나)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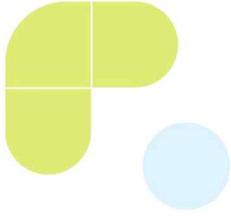
- 이용자에게 이용자의 인권 보호 규정 및 절차를 정기적으로 안내하여야 함
- 이용자의 인권교육은 지역 인권단체 및 시·군 도민인권지킴이단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용자 욕구를 파악하여 인권교육 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하여야 함
-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넘어 서비스 운영 시 이용자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와 절차를 마련해야 함
- 농어촌 및 교통수단에 제약이 있는 이용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생활지원사의 동행 지원 서비스 제공 기준의 개선이 필요함
- 이용자 요청에 따라 공공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에서 정기적으로 안내하는 시스템으로 변경하고, 공공정보제공 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하여야 함
-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하였을 때 지자체는 이용자에게 서비스 자격 결정 여부를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바. 평가 종합의견

- 노인 맞춤형 돌봄서비스의 목적에 맞게 광역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나, 수행기관 간 실무협의회가 구성된 시·군은 5곳에 불과하며, 광역지원기관과 15개 시·군 실무협의체가 구성된 곳은 2곳에 불과함
- 충청남도는 수행기관 간 실무협의회와 15개 시·군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15개 전체 시군으로 확대 강화하여야 함
- 본 서비스의 특성상 생활지원사를 위한 별도의 인권 매뉴얼이 필요함. 생활지원사를 위한 별도의 인권 매뉴얼을 마련하고, 인권 매뉴얼 절차 안내 교육을 하여야 함
- 원거리 서비스 제공 시 생활지원사에게 업무수행을 위한 별도의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지만, 복지 사각지대 및 교통수단의 제약이 있는 지역을 고려하여 교통비 차등 지급 및 거리 기준으로의 변경을 모색하여야 함
- 생활지원사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관을 거치지 않고, 생활지원사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상담 기관에 생활지원사가 직접 상담을 신청하는 시스템으로 변경이 필요함
- 생활지원사는 노인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예기치 못한 다양한 상황 때문에 정서적 충격과 트라우마가 생길 우려가 많아 비밀보장의 원칙을 기준으로 지역의 심리상담 및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생활지원사의 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통합적 시스템이 필요함
- 매년 1회 이용자의 인권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용자의 인권교육은 지역 인권단체 및 시·군 도민인권지킴이단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인권교육 방법의 다양화를 모색하여야 함
- 농어촌 및 교통수단에 제약이 있는 이용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생활지원사의 동행 지원 서비스 제공 기준에 있어 개선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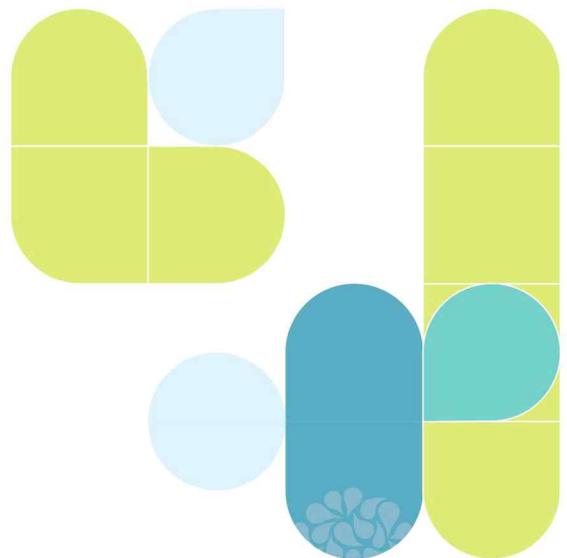
사.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명단

번호	성명	소속	직책	비고
1	김혜경	백석대학교	교수	인권위원
2	오복경(단장)	충청남도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	
3	전용만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예산군지회	지회장	인권지킴이단
4	오병효	(사)계룡사랑시민연대	대표	
5	이행찬(서기)	천안정서발달지원센터 씨앗	대표	
6	지승훈	서천군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센터장	전문가
7	오은희	충청남도 인권센터	인권보호관	인권센터



부 록

1. 2020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추진내역
 - 1-1. 2020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개선권고 결과
2. 2020년 시책 인권영향평가 추진내역
 - 2-1. 2020년 시책 인권영향평가 개선권고 결과
3.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4. 충남 도민 인권선언문



참고 1 2020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추진내역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추진내역	
원안동의 (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충청남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충청남도 자체감사 규칙 ▶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시행규칙 ▶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 충청남도 공무원교육원 학칙 규칙 ▶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시행규칙 ▶ 충청남도 시장정비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칙 ▶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충청남도 정보화 추진 조례 ▶ 충청남도 제안제도 운영 조례 ▶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조례 ▶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 충청남도 중소기업 수출 진흥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 ▶ 충청남도 순직 및 공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재단법인 보령 해양머드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사무위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충청남도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순환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 ▶ 충청남도 도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추진내역

- ▶ 충청남도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충청남도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개정안
- ▶ 충청남도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개정안
- ▶ 충청남도 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 ▶ 충청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청남도 백제문화권개발자문위원회 조례 폐지안
- ▶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개정안
- ▶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능사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 ▶ 충청남도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보상에 관한 규칙 폐지안
- ▶ 충청남도 농업기술원 시험·분석 업무절차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충청남도 재해복구공채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 ▶ 충청남도 소규모 재해복구공채조례 시행규칙 폐지안
- ▶ 충청남도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 충청남도 소방항공구조구급대 운영규칙 전부개정안
- ▶ 충청남도 학술연구용역시행절차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 충청남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 ▶ 충청남도 농어촌주택사업운영관리조례
- ▶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개정안
- ▶ 충청남도 도시개발 조례
-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 충청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 ▶ 충청남도 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 ▶ 충청남도 지진피해 조사단 구성 및 운영 조례
- ▶ 충청남도 지하수 조례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추진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충청남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충청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 충청남도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 충청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 충청남도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충청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 충청남도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 충청남도도로보수용장비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충청남도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충청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 충청남도 지역경제외교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 충청남도 문화원 설립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충청남도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칙 폐지안 ▶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개정안 ▶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 규칙 일부개정안 ▶ 충청남도 도립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안 ▶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충청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규칙 일부개정안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안 ▶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충청남도 행정정보통신운영관리규정 전부개정안 ▶ 충청남도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폐지안 ▶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충청남도 병원선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충청남도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충청남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 ▶ 충청남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충청남도 도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추진내역	
수정권고 (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충청남도 컨설팅감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산림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충청남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안 ▶ 충청남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충청남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참고 1-1 2020년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 개선권고 결과

순번	조례명	검토조례안	검토결과
1	충청남도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내용에서 보호 대상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의 목적에 부합한 표현이 아니며,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조장할 수 있다. ▶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명칭변경 	수용
2	충청남도 악취방지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별균형’을 고려한 조례이나 구체적 비율이 명시되지 않아 내용이 모호함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비율을 명시하여 수정 	수용
3	충청남도 컨설팅감사 규칙 전부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민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 차원에서 용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 ▶ “법령 등”의 정의를 제2조(정의)에 조문을 추가할 것을 권고 	수용
4	충청남도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장애인의 관람을 제한하는것은 문화·예술에 관한 권리를 제약하는 차별이므로 “정신이상자” 표현 삭제 	수용
5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서점인증요건에 대해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 지원을 받는 도민이 혼동 할 우려가 있음 ▶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지원·운영할 수 있도록 권고 	수용
6	충청남도산림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정안 제7조 1호에 표현된 ‘이상행동’은 ‘정상행동’으로도 구분 지을 수 있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차별 할 우려가 있음 ▶ 제7조 1호 중 ‘이상 행동’을 삭제하거나 충청남도 산림박물관을 방문하는 도민이 차별 없이 관람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권고. 	수용
7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별지 제2호에 ‘최종학력’을 기입함으로써 선입견과 차별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며, 농어촌기금의 목적과 맞지 않음 ▶ 별지 제2호 농어촌진흥기금 용자신청 검토의건의 1. 사업신청자에 기입하도록 되어있는‘최종학력’을 삭제할 것을 권고. 	수용
8	충청남도 물류단지실수요 검증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에 대한 구체적 비율이 명시되지 않아 수정 권고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비율을 명시할 것을 권고 	수용

순번	조례명	검토조례안	검토결과
9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본 조례 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서로 협력해야 하는 평등한 관계임에도 ‘보좌’는 상하 관계를 내포하고 있어 삭제 권고 ▶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수정 권고, 장애 유무가 직무 수행과 관련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부추길 수 있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로 수정 권고 	수용
10	충청남도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조례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수정 권고,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한 부분이며,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타 사회적경제 기업이 배제되어 차별받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수정권고 ▶ ‘관계인’ ⇨ ‘당사자’로 수정권고, ‘관계인’에 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 해석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권고 	수용
11	충청남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에 대한 구체적 비율이 명시되지 않아 수정 권고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비율을 명시할 것을 권고 ▶ 협의회 구성 시 위촉의 주체가 명시되지 않아 해석이 분분할 수 있으므로 위촉의 주체를 명확히 하여 수정할 것을 권고 	수용
12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를 “노동”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수정 권고 ▶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가 2020.4.1. 시행됨에 따라 충청남도 조례 용어 정비 필요 ▶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일한다는 개념이 내포된 ‘근로’라는 용어를 사용자와 동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일한다는 능동적·가치중립적인 개념인 ‘노동’으로 수정하여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 필요 	수용
13	충청남도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구성 시 특정성별에 대한 구체적 비율이 명시되지 않아 수정 권고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비율을 명시할 것을 권고 ▶ 알기 쉬운 법령을 위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 사용 권고, “거양”, “정려”를 각각 “향상”과 “모든 힘을 다하여”로 수정 권고 	수용

참고 2 2020년 시책 인권영향평가 추진내역

▶ 시책 인권영향평가 대상(3건)

년도	심의 건수	평가 대상	비고
2020	3	① 시책(성평등 인권교육의 내실화-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② 공공건축물 ‘충남내포혁신플랫폼’ ③ 사회복지시설 규정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개소,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	시책 1건 공공건축물 1건 사회복지시설 5개소

▶ 시책 인권영향평가단 구성 비율

구분	계(명)	인권위원	인권지킴이단	전문가	인권활동가
2020	18	7	5	4	2

참고
2-1

2020년 시책 인권영향평가 개선권고 결과

시책	개선권고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수용여부 (담당부서)
<p>성평등 인권교육의 내실화- 찾아가는 폭력예방 교육 (여성가족정책관/ 권익보호팀)</p>	<p>충청남도 여성가족정책관에게, 1. 성평등 관점의 교육 가. 교육대상 중 수행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 나. 지역 네트워크 활용하여 안정적 교육 장소 마련 다. 일회성 교육보다 심도 있는 연속교육 추진 필요(여성가족부 사업지침 변경 요청) 2. 성평등 교육의 내실화 가. 인권 약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 및 분석 필요 나. 동료 모니터링을 비롯한 성평등 관점의 모니터링 시행 다. 모니터링을 위한 객관적 지표 마련 라. 모니터링 및 교육 지원을 전담하는 별도 인력 및 예산 마련 마. 교육생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는 참여형 교육기법 활용 3. 교육 후속 조치 가. 인권 약자(장애, 이주민 등)의 특성을 반영한 설문 양식(번역 등) 마련 나. 교육 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후 차기 사업에 반영 다. 강사의 차별적 행위(언어 및 태도) 확인 시 대응 매뉴얼 마련 4. 강사 안전 가. 이동 및 강의 중 강사 안전을 위한 보험 가입과 예산 마련 나. 교육 취약지역 기자재 확보 및 교육장 지원 등을 위한 보조 인력 지원 다. 강사의 인권 보장 및 안전 도모를 위한 사전 조사 및 안내지원 시스템 마련</p>	<p>수용</p> <p><input type="checkbox"/> 성평등 관점의 교육 등 4개분 야에 대한 개선방안 15개 제시 - 성평등관점 : 4개사업 - 성평등 교육의 내실화 : 5개 사업 - 교육후속조치 : 3개사업 - 강사 안전 : 3개사업 ⇨ 제시한 15개 사업에 대해 2021년도 사업계획 수립 시에 예산범위 내에서 모두 반영 : [수용]</p>

시책	개선권고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수용여부 (담당부서)
<p>공공건축물 ‘충남내포혁신플랫폼’ (공동체정책과/민관협치팀)</p>	<p>충청남도 공동체정책과장에게, 1. 충남내포혁신플랫폼 외부공간 가. 대지 및 건축물 출입구에 다국어 인포그래픽(정보 그림)을 설치할 것 2. 충남내포혁신플랫폼 내부공간 가. 건축물 내부공간에 다국어 인포그래픽(정보 그림) 설치할 것 나. 다양한 이용자(장애인, 비장애인 등)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보제공 마련할 것 다. 접근성이 좋은 위치에 전동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급속충전기 설치할 것 라. 위급상황 시 사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기(자동심장충격기) 설치할 것 마. 시설물 내 이용자 누구나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공간 마련 및 안내문 설치</p>	<p>수용</p> <p><input type="checkbox"/> (외부공간)충남내포혁신플랫폼 건축물 출입구에 다국어 인포그래픽(정보 그림)을 설치하여 모든 방문자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하도록 하겠음</p> <p><input type="checkbox"/> (내부공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축물 내부공간에 다국어 인포그래픽(정보 그림)설치 2. 다양한 이용자(장애인, 비장애인 등)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정보제공 3. 전동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급속충전기를 설치 4. 이동약자에 대한 배려와 위급상황 시 사용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5. 시설물 내 이용자 누구나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방법 강구토록 하겠음
<p>사회복지시설 규정 (장애인복지과/장애인자립팀, 사회복지과/사회복지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충청남도 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에게, 해당 시설이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규정을 개정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도 점검할 것 2. 명천종합사회복지관·당진남부사회복지관·천안시꽃밭·민들레일터·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 5개 시설의 장애인에게, 시설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규정을 개정할 것(47개 조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관계 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규정 개정 2) 인권침해 3) 노동권 침해 4) 차별로 인한 불이익 5) 위원회 구성 최소 인원 확대, 외부위원 	<p>수용</p> <p>▶ 민들레일터</p> <p><input type="checkbox"/> 위원회(시설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고충처리위원회, 인권보장위원회, 노사협의회 등)의 다양성 및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개선 권고 조항 수정</p> <p><input type="checkbox"/> 인사관리의 투명성, 공정성 제고를 위해 관련조항 수정</p> <p><input type="checkbox"/> 종사자 취업 및 복무관리를 위한 개선 권고 사항 수용</p> <p><input type="checkbox"/>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선 권고 사항 수용</p>

시책	개선권고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수용여부 (담당부서)
	<p>참여 보장, 특정 성별 편중 방지</p> <p>6)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권한 남용</p> <p>7) 용어 수정</p> <p>8) 필수 교육 규정 미비</p>	<p>▶ 천안시 꽃밭</p> <p><input type="checkbox"/>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검토히 수용하며, 7월경(세부일정 미정) 실시될 2021년 2/4분기 운영 위원회에 개선권고 사항을 보고 하여 운영규정을 개정할 예정</p> <p>▶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p> <p><input type="checkbox"/> 취업규칙, 복무규정, 인사규정(제41조(정년) 제외), 인사위원회 규정, 이용인 서비스 보장(인권·개인정보) 관리규정, 고충처리 관리규정 개선안을 관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 추진</p> <p><input type="checkbox"/> 개정안을 시설운영위원회, 위탁법인 운영위원회 상정 및 안건 가결 후 적용(이행 완료 예정일 : 2021. 7. 31.)</p> <p style="text-align: center;">부분수용</p> <p>▶ 당진남부사회복지관</p> <p><input type="checkbox"/> 충청남도 인권위 권고사항 중 종사자 정년 연장에 관한 부분은 지침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 안내」 중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 종사자 60세 기준과 연관된 사항으로, 60세 초과 종사자의 경우 시설이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권고사항의 수용을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임</p> <p><input type="checkbox"/> 그 외 나머지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은 남부사회복지관에 권고사항 수용을 요청 한 바, 남부</p>

시책	개선권고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수용여부 (담당부서)
		<p>사회복지관이 노무법인의 지문을 통해 수용 가능한 운영 규정 및 취업규칙은 법인이사회 승인을 거쳐 수정 반영 예정임</p> <p>▶ 보령명천종합사회복지관</p> <p>□ 운영규정의 일부 조항 중 상위법인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상충하는 조항은 개선 수용하나, 직원의 정년을 65세로 개선하는 조항은 시설에서도 인건비문제로 재정부담을 느껴 당장 바꾸는 것은 시기상조라 불수용함</p> <p>□ 충청남도 인권위 권고사항 중 종사자 정년 연장에 관한 부분은 지침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업무처리 안내」 중 정부의 인건비 보조금 지급연령 종사자 60세 기준과 연관된 사항으로, 60세 초과 종사자의 경우 시설이 자체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므로, 권고사항의 수용을 강제하기 어려운 부분임</p> <p>□ 그 외 나머지 운영규정 및 취업규칙은 남부사회복지관에 권고사항 수용을 요청 한 바, 남부사회복지관이 노무법인의 지문을 통해 수용 가능한 운영 규정 및 취업규칙은 법인이사회 승인을 거쳐 수정 반영 예정임</p>

시책	개선권고 (인권위원회 인권영향평가 소위원회)	수용여부 (담당부서)
		<p>▶ 민들레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인사관리규정 제10조(위원 구성) <input type="checkbox"/> 취업규칙 내 표기된 모든 ‘근로인’ 용어를 ‘근로자’로 수정 <input type="checkbox"/> 비인권적 행위 및 폭력에 대한 사전 예방 규정 삽입 <input type="checkbox"/> 현행유지 <p>▶ 청양군장애인재활근로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운영위원회 규정을 사업안내 및 관리지침에 따라 수정

참고 3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제정) 2018-10-01 조례 제 4387호
(일부개정) 2020-04-01 조례 제 4679호 충청남도 조례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민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도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및 도 소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인권약자”란 소외되기 쉬운 사람이나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를 당한 집단의 구성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는 도민의 인권과 관련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와 부합되도록 해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 인권선언의 정신과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이 발생한 때에는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도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의 권리 및 협력) ① 모든 도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도민은 「대한민국헌법」 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③ 모든 도민은 다른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역사회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보호 및 증진사업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인권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도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시책
3. 분야별 인권과제 추진목표 및 이행전략
4. 기본계획 실행에 필요한 자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인권정책 수립과 이행, 도민인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성별 분석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도민의 의견수렴과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증진시책토론회) 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인권증진시책 토론회(이하 “시책토론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책토론회는 도지사가 주관하며, 관계 부서 실·국장급 공무원과 충청남도 인권위원회 위원, 도민인권지킴이단,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③ 시책토론회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인권행정 실현을 위해 관계 부서 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조정한다.

④ 시책토론회는 연 2회 개최하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인권지수의 개발)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권고 사항에 대한 도 차원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수를 연구·개발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인권지수를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사업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인권영향평가) ① 도지사는 자치법규 및 시책 등이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권영향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규칙

2. 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에서 선정한 시책 등

제10조(인권교육) ① 도지사 또는 도가 출자·출연한 기관, 도의 사무위탁기관 또는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장과 그 소속 공무원·직원은 매년 4시간 이상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민간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개발 및 연구
2.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해마다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11조(인권지킴이단의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민인권 지킴이단(이하 “인권지킴이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인권지킴이단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에서 진행되는 소정의 인권교육을 수료한 도민, 인권약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한다.

③ 인권지킴이단은 도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인권교육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활동
2. 인권실태조사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활동
3. 주요 인권정책에 관한 모니터링, 홍보와 지원활동
4.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제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인권증진을 위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제3항의 임무를 수행한 인권지킴이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인권보호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인권정책 추진, 인권문화 확산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관계기관과의 협력) ① 도지사는 인권문화 확산을 위해 국내외 정부·지방정부 및 비정부기구와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실시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류 및 협력사업 등을 위해 관련 전문가 등에게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인권위원회

제14조(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시책의 효율적 심의·자문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심의·자문
2. 기본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심의·자문
3. 도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 정책, 관행에 대한 자문 및 개선권고
4.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5. 인권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6. 그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이 경우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당연직 위원이 주재한다.

③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대한 식견과 경험을 충분히 갖춘 사람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 중에 인권약자를 포함해야 하고, 인권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1. 공개모집을 통해 위촉된 도민
2. 인권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국제기구 등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
3. 인권 관련 비영리 민간단체·법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4. 인권 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
5. 충청남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6. 그 밖에 인권증진에 소양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권부서의 장이 된다.

제16조(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회의 진행 및 회의록을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하거나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위원회에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⑧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독립성 및 신분보장)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지 아니한다.

1.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3. 질병이나 국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위원회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회 활동 취지에 반하는 행동, 다른 사람에 대한 인권침해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성실한 출석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 제18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 ① 도지사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할 경우 인권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 ② 인권위원회는 도의 제도, 정책, 관행 등이 도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인권센터

- 제19조(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도민 인권 보장 및 증진 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를 둔다.
- 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의 조사·연구 및 그 개선방안 연구
 2. 인권침해 및 차별관련 상담조사 및 권리구제
 3.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도민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및 개인과의 연대·협력
 5. 인권분야 정부기관·비영리 민간단체·법인과의 교류·협력
 6. 인권증진활동(상담사례 등)보고서 발간
 7. 그 밖에 도민의 인권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도지사는 인권센터의 업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할 경우 비영리 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 제20조(구성)** ① 인권센터에는 센터장과 상담 및 조사, 연구 등을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 ② 인권센터의 장은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도지사가 선임한다.
- ③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하되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 이상으로 근무기간이 5년 이상인 사람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었던 기간이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사람
 3.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한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그 가운데 인권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4. 인권, 성평등, 시민사회운동 등 관련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등 활동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제21조(직무의 독립성) ① 도지사는 인권센터의 운영 및 활동에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인권센터의 장 등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은 「지방공무원법」에 의하여 보장된다.
- ③ 인권센터의 장은 인권센터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며,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인권센터의 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도지사가 인정하여 승인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직을 겸임할 수 없다.

제22조(인권보호관 운영) ① 도지사는 도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인권센터에 도민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을 둔다.

- ② 인권보호관은 11인 이내 합의제 형태로 운영하고, 센터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의 상임 인권보호관과 6인 이내의 비상임 인권보호관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③ 상임 인권보호관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임용한다.
- ④ 비상임 인권보호관은 제20조제3항을 준용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 ⑤ 비상임 인권보호관의 해촉은 제17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3조(상담 및 조사) ① 인권센터의 장은 인권센터에 상담신청 등이 접수 되었거나 도지사 또는 위원회가 의뢰한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인권침해 사항에 대해 조사하고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상임 인권보호관이 중대한 인권침해 등의 사안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권으로 조사하여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 1. 도 및 그 소속 행정기관
- 2. 도내 시·군(도의 위임사무에 한한다)
- 3. 도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 4. 도의 사무위탁기관(도의 위탁사무에 한한다)
- 5. 도의 지원을 받는 각종 단체와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인권센터장이 조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로 하지 않을 수 있다.

- 1.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조사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 2. 조사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
- 3. 그 밖에 조사신청이 현저하게 이유가 없거나 허위의 사실에 의거하고 있거나 인권보호 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졌음이 명백한 경우

- ③ 인권센터의 장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한 현장 조사·문서열람·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자료제출 및 출석·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인권센터의 장은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임직원, 전문가 등을 조사인력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
- ⑤ 인권센터의 장은 인권 관련 도 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건의할 수 있다.

제24조(시정권고 및 후속조치) ① 인권센터의 장은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도지사에게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인권침해 결정은 인권보호관 재적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인권센터의 장은 의결내용을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위 결과를 신청인 및 피신청인, 조사기관의 장 등 관련 당사자들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조사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시정권고에 대한 조치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지원) 도지사는 인권센터와 인권보호관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조사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상임 보호관 및 조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의 수당 등 제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6조(표창) 도지사는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인권활동가, 인권 관련 기관·단체,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표창할 수 있다.

제27조(비밀엄수)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 수행 과정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28조(준용)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사업의 보조금 신청·교부·정산,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충청남도 포상 조례」 등에 따른다.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 또는 임명된 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인권지킴이단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남은 기간으로 한다.

참고 4 충남 도민 인권선언문

전 문

우리는 인간에게 존엄함과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충남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선조들의 의병운동과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이어받고, 민족의 자주독립에 헌신했던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 발전 시킴으로써, 인류애와 정의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권리들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인간 존엄의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적, 인종, 성, 연령, 장애, 경제적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한 그 어떠한 차별도 단호히 거부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 소수자 존중은 관용과 연대의 우리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을 천명한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지역의 생태와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 나감은 물론, 인도주의 정신과 인권적 가치에 바탕을 둔 올바른 교육 환경과 풍토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자유로운 예술창작과 문화 활동을 보장하여 주민의 삶이 날로 풍요로워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인권이 꽃피어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도민의 민주적 참여와 대화를 통해 ‘충남 도민 인권선언문’을 선포한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가꾸고 지키려는 지역적 노력의 차원을 넘어, 전 인류를 향한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연대를 실천하고자 하는 충남도민의 고귀한 약속을 담고 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과 의지를 모아, 충청남도의 모든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제1장 인권보장의 기본원칙

제1조 차별금지의 원칙

- ① 충남도민은 성별, 나이, 외모, 장애, 인종, 종교, 병력(病歷), 사상, 신념, 출신 및 거주지역, 결혼여부, 가족구성, 학력, 재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국적, 전과(前科), 임신, 출산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는 모든 차별행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도민의 인권을 보장한다.

제2조 민주적 참여의 원칙

- ① 충남도민은 충청남도의 주인으로서 행정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지며, 충청남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는 정보공개를 충실하게 하고, 충청남도의 정책결정과정,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

제2장 인간답게 살 권리

제3조 주민생활기본선의 보장

- ① 충남도민은 헌법에 따라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충청남도는 이를 보장하여야 하며 이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
- ② 충청남도는 복지, 교육, 문화, 환경 등 제반 분야에서 주민생활의 기본선을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4조 주거에 관한 권리

- ① 충남도민은 건강하고, 안전하며, 안정적이고 쾌적한 주거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는 도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

제5조 교육에 관한 권리

- ① 충남도민은 교육에 적합한 시설과 환경에서 생애주기별로 적절한 교육을 받고 학습할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는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직업교육과 평생교육을 위한 적합한 공간과 시설,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인권 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평화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건강에 관한 권리

- ① 충남도민은 건강을 누리고, 안전한 먹거리를 먹으며, 질병예방을 위한 교육과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는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중위생과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며, 경제적 이유 또는 정보 부재의 이유로 주민의 건강권이 침해 받지 않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가 있다.

제7조 문화에 관한 권리

- ① 충남도민은 다양성이 보장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린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충청남도는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과 시설을 마련하고,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할 책무가 있다.

제3장 안전하게 살 권리**제8조 안전에 관한 권리**

- ① 충남도민은 모든 형태의 범죄와 폭력, 재해, 재난 기타 위험요소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는 도민들이 차별 없이 모든 위험 요소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

제9조 환경에 관한 권리

- ① 충남도민은 오염되지 않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는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오염원을 철저히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도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책무가 있다.

제10조 이동권 및 접근권

- ① 충남도민은 자기 의사에 따라 이동하고 공공이 왕래하는 모든 시설이나 행사에 그 사람의 장애나 신체의 불편 여부와 상관없이 접근하여 이용할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는 이동 및 접근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다.

제4장 일과 권리

제11조 노동에 관한 권리

- ① 충청도민은 차별 없이 공정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노동할 권리와 실업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는 도민의 고용안정과 적절한 임금 보장, 노동조건 개선의 책임을 진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여성 및 이주 노동자, 장애인 노동자, 청소년 노동자, 고령 노동자 등 노동 약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 할 책무가 있다.

제12조 농어민의 권리

- ① 충청남도의 농어민은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받으며 지속가능하고 안전하게 농어업을 할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는 농어민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농어업을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할 책무가 있다.

제5장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

제13조 어린이, 청소년

- ① 충청남도의 어린이, 청소년은 건강하고 안전하며 차별 없이 성장할 권리를 갖는다.
- ② 충청남도는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적 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하고, 교육받을 권리, 쉼 권리, 문화, 복지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며 도정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할 책무를 갖는다.

제14조 여성

- ① 충청남도의 여성은 나이, 외모, 결혼여부 및 출산,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고 평등할 권리를 갖는다.
- ② 충청남도는 여성이 가정, 직장, 일상에서의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폭력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책무를 갖는다.

제15조 장애인

- ① 충청남도의 장애인은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 받는다.

② 충청남도는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일상생활에 맞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립 가능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갖는다.

제16조 노인

- ① 충청남도의 노인은 빈곤과 외로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노후를 살아갈 권리를 갖는다.
- ② 충청남도는 노인이 존엄을 지키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할 책무를 갖는다.

제17조 이주민

- ① 충청남도의 이주민은 국적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② 충청남도는 이주민이 인종,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체류 자격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으며,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책무를 갖는다.

제18조 북한이탈주민

- ① 충청남도에 사는 북한이탈주민은 차별 없이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 ② 충청남도는 북한을 떠나 국내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주거, 교육, 직업 등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19조 그 외 소수자

충청남도는 앞에 나온 사회적 소수자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책무를 갖는다.

제20조 그 외의 권리

이 선언에서 명시된 권리 외에 도민이 가지는 권리는 모두 동등한 가치로 존중되어야 하며, 이 선언에서 명시되지 않음을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제6장 인권선언의 이행

제21조 이행체계의 마련

- ① 충청남도는 이 선언문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례 및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고 정책을 수립 집행하여야 한다.
- ② 충청남도는 인권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 ③ 충청남도는 인권증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④ 충청남도는 의회,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 시민사회와 협력체계를 갖추고 인권교육

실시, 인권문화 확산 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충청남도는 국내외의 지방자치단체, 국제인권기구 등과 교류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⑥ 충남 지역 주민은 스스로 인권을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인권공동체 구현의 주체로서 역량증진을 위해 노력한다.

2021 충청남도

인권영향평가 보고서

발행일 2021년 12월

발행처 충청남도

편 집 충청남도 인권센터(041-635-2339)

인 쇄 선우(주) 041-632-2363